

2023회계연도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1897호, 제1898호, 제1899호
- 다. 제출일자 : 2024. 5. 27.
- 라. 회부일자 : 2024. 5. 30.

## 2. 제 안 이 유

-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및 제1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결산 및 예비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3. 결산 개요

#### 가. 일반회계

##### 1) 세입결산

####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23	172,196	172,196	198,385	176,017	2,123	20,245	88.7%

- 세입예산현액은 1,721억 96백만원이었으나 실제 1,983억 85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88.7%인 1,760억 17백만원을 수납하고 21억 23백만원은 정리보류 처분하였으며, 202억 45백만원은 미수납됨.

##### 2) 세출결산

####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변경	이용/ 이체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3	449,979	1,765	20,244	215 (-215)	104 (-104)	3,095 (-3,095)	471,988	463,878	3,833	1,131	2,702	92	4,185 (0.9%)

- 예산액 4,499억 79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억 65백만원, 예비비 사용액 202억 44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719억 88백만원으로, 이 중 98.3%인 4,638억 78백만원을 지출하고 0.8%인 38억 3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9%인 41억 85백만원이 발생되었음.

###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용
  - 예산 이용은 없음.
- 전용
  - 예산 전용은 6건에 2억 15백만원으로,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사업 등에서 발생함
- 변경
  - 예산 변경은 4건에 1억 04백만원으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업 등에서 발생함
- 예비비
  - 예비비 지출은 2건에 202억 44백만원으로, ‘매매 대금 반환 청구’ 판결금 133억 45백만원, ‘무상양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금 68억 99백만원임.
- 이체
  - 예산 이체는 11건에 30억 95백만원으로, '23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재난상황관리과) 및 부서별 업무조정에 맞추어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운영 및 개선’,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등의 사업을 실 내부에서 이체하였음.

###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은 1건에 11억 31백만원, 사고이월은 10건에 27억 2백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은 예산현액 4,719억 88백만원 대비 0.8%인 38억 33백만원임.

##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41억 85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4,719억 88백만원 대비 0.9%에 해당하는 규모임.

###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응률 (%)	비고
2023	471,988	4,185	0.9	
2022	731,178	3,206	0.4	
2021	471,469	3,605	0.8	

#### - 발생원인별 내역

- 보조금정산잔액 : 92백만원
- 예산절감액 : 2억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7억 42백만원
- 낙찰차액 : 6억 86백만원
- 지출잔액 : 24억 66백만원

## 나. 교통사업 특별회계

### 1) 세입결산

####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23	0	0	9,220	9,220	0	0	100.0%

-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나 실제 92억 20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92억 20백만원 전액 수납하였음.

### 2) 세출결산

####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변경	이용/ 이체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불응률)
									계	명시	사고		
2023	7,938	19,069	-	-	-	-	27,008	16,286	5,288	-	5,288	-	5,433 (20.1%)

- 예산액 79억 38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90억 69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70억 8백만원으로 이 중 60.3%인 162억 86백만원을 지출하고 19.6%인 52억 88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0.1%인 54억 33백만원이 발생되었음.

###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 용 : 해당없음
- 전 용 : 해당없음
- 변 경 : 해당없음
- 예비비 : 해당없음
- 이 체 : 해당없음

###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과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은 5건에 52억 8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270억 8백만원 대비 19.6%임

###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54억 33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270억 8백만원 대비 20.1%임.

##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	비고
2023	27,008	5,433	20.1	
2022	43,696	393	0.9	
2021	25,112	394	1.6	

#### - 발생원인별 내역

- 지출잔액 : 54억 33백만원

## 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1) 세입결산

####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정수결정액(A)	수납액(B)	정리보류액(C)	미수납액(A-B-C)	수납률(%) (B/A)
2023	3,250	3,250	3,250	3,250	-	-	100%

- 세입예산현액은 32억 50백만원이고, 32억 50백만원이 정수결정되어 32억 50백만원 전액 수납하였음.

### 2) 세출결산

####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전용	변경	이용/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반납액	집행잔액(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3	7,495	4,322	-	-	6 (-6)	-	11,817	733	3,480	3,480	-	3,730	3,874 (32.8%)

- 예산액 74억 95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3억 22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8억 17백만원으로 이중 6.2%인 7억 33백만원을 지출하고 29.4%인 34억 80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2.8%인 38억 74백만원이 발생되었음.

###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 용 : 해당없음
- 전 용 : 해당없음
- 변 경 : 예산 변경은 1건에 6백만원으로  
-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6백만원임.
- 예비비 : 해당없음
- 이 체 : 해당없음

###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과 사고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은 2건에 34억 80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18억 17백만원 대비 29.4%임.

###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38억 74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118억 17백만원 대비 32.8%임.

##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	비고
2023	11,817	3,874	32.8	
2022	21,009	-	0.0	
2021	45,244	25	0.1	

#### - 발생원인별 내역

- 보조금정산잔액 : 38억 19백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43백만원
- 지출잔액 : 12백만원

## 라. 도시개발특별회계

### 1) 세입결산

####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정리보류액(C)	미수납액(A-B-C)	수납률%(B/A)
2023	14,459	14,459	37,754	37,754	-	-	100%

- 세입예산현액은 144억 59백만원이고, 377억 54백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377억 54백만원 전액 수납하였음.

### 2) 세출결산

####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전용	변경	이용/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반납액	집행잔액(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3	851,313	120,886	833	800(-800)	1,146(-1,146)	-	973,032	801,229	130,406	26,160	104,246	398	41,000(4.2%)

- 예산액 8,513억 13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208억 86백만원, 예비비 사용액 8억 33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730억 32백만원으로 이중 82.3%인 8,012억 29백만원을 지출하고 13.4%인 1,304억 6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인 410억원이 발생되었음.

###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 용 : 해당없음
- 전 용 : 예산 전용은 2건에 8억원으로
  - 도로시설물 노후 전력설비 개량 → 도로기전시설물 공공요금 관리  
4억 27백만원
  - 마들지하차도 보수 → 도로기전시설물 공공요금 관리  
3억 73백만원임.
- 변 경 : 예산 변경은 6건에 11억 46백만원으로
  - 동부간선도로 확장(녹천교 ~ 의정부시계) 4억원
  - 노들로 구조개선 3억 72백만원
  - 중차량노선 시설물 성능개선 2억 10백만원 등임.
- 예비비 : 예비비사용은 2건에 8억 33백만원으로
  - 성산대교 성능개선 4억 75백만원
  - 한강대교 보수공사 3억 58백만원임.
- 이 체 : 해당없음

###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은 10건에 261억 60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60건에 1,042억 46백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은 예산현액 9,730억 32백만원 대비 13.4%인 1,304억 6백만원임.

##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410억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9,730억 32백만원 대비 4.2%임.

###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응률 (%)	비고
2023	973,032	41,000	4.2	
2022	898,055	45,835	5.1	
2021	1,021,877	28,398	2.8	

#### - 발생원인별 내역

- 보조금 정산잔액 : 7억 86백만원
- 예산절감액 : 12백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12억 91백만원
- 낙찰차액 : 184억 38백만원
- 지출잔액 : 204억 72백만원

# 마 . 재 난 관 리 기 금

## 기 금 운 용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수 입								지 출				
	계	전년도 이월액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기타	계	공유목적 사업비 등	예치금	기타	다음연도 이월액
2023	1,031,653	29,872	221,695	0	0	32,645	686,071	61,370	1,031,653	242,941	716,092	11	72,609
2022	1,475,780	4,718	473,024	39,000	200,000	16,832	719,036	23,170	1,475,780	759,816	686,071	20	29,872
2021	1,175,145	10,004	263,853	113,675	600,000	4,565	172,233	10,815	1,175,145	451,382	719,036	9	4,718

- 수입은 지방채 이자상환액(115억 3백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전입금 2,216억 95백만원, 이자수입 326억 45백만원, 예치금회수 6,860억 71백만원, 전년도이월액 298억 72백만원, 기타 613억 70백만원을 합한 1조 316억 53백만원이며
- 지출은 비용자성사업비 2,429억 41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726억 9백만원, 행정운영경비 11백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160억 92백만원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음.

## 바 . 도로 굴착 복구 기금

### 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수 입							지 출				
	계	전년도 이월금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상환금	기타	계	비용지성 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다음연도 이월액
2023	73,023	1,382	-	1,049	26,212	-	44,380	73,023	40,269	31,727	-	1,027
2022	59,703	1,081	-	620	16,893	-	41,109	59,703	32,109	26,212	-	1,382
2021	53,193	-	-	423	19,738	-	33,032	53,193	35,219	16,893	-	1,081

-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3억 82백만원, 이자수입 10억 49백만원, 예치금회수 262억 12백만원, 기타(원인자부담금) 443억 80백만원을 합한 730억 23백만원이며, 이중 도로굴착복구공사와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비, 기금관리비로 기금총액의 55.1%인 402억 69백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17억 27백만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0억 27백만원은 감리비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함.

## 4. 검토 의견

### 가. 일반회계

#### 1) 세입결산

###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23	172,196	172,196	198,385	176,017	2,123	20,245	88.7%
2022	155,722	155,722	203,681	183,404	988	19,289	90.0%
2021	68,967	68,967	84,343	68,109	45	16,189	80.8%

#### 가) 개요

-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721억 96백만원이었으나 실제 1,983억 85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88.7%인 1,760억 17백만원이 수납되고 21억 23백만원은 정리보류 처리하였으며, 202억 45백만원은 미수납되었음.

#### 나) 세수추계

-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1,983억 85백만원)의 경우 예산액(1,721억 96백만원) 대비 115.2%로 총 261억 89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세수추계 차가 크게 발생한 항목들은 아래 [표]와 같음.

[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과다한 항목들

(단위: 백만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실수납액	차액 (b)-(a)	비고
경상적 세외수입					
211-02 공유재산임대료	34,369	48,074	47,625	13,705	○ 23년 하반기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종료 및 지하도상가 재산 평가액 상승에 따라 대부료 및 사용료 징수결정액 증가
212-01 도로사용료	89,279	76,610	74,730	△12,669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유지(국토교통부, 도로법 제68조)하여 차액 발생
임시적 세외수입					
224-07 그외수입	18,117	15,889	14,687	△2,228	○ 지하도상가 공용관리비 감면으로 인한 차액 발생 ○ 맨홀정비비 청구수입 예산 산정시 고려한 최근 3년 평균 정비물량보다 실제 정비물량이 적어 차액 발생
225-01 지난연도수입	6,260	19,466	2,766	13,206	○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평균 징수율 등을 고려하여 실제 수납가능한 금액으로 예산 편성하여 예산과 징수결정액 간 차이 발생 ※ 다만 지하도상가 임대료는 장기체납 해소를 위해 시효 완성 체납건을 정리보류하여, 실수납과 예산 간에도 차이 발생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36-01 부담금	-	9,220	9,220	9,220	○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15억2천) 및 LH 수서역세권(탄천변동축도로 확장 77억) 교통개선부담금으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후 징수결정 함에 따라 차액 발생

- 전년도('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가 479억 59백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23회계연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는 261억 89백만원으로 감소하여 세수추계가 일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됨.
- 당해연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의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임대료', '지난연도수입', '부담금'의 징수결정액이 예산액 대비 361억 3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로사용료' 126억 69백만원, '그외수입' 22억 28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 개별적인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변동 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정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료 및 광고부대시설 사용료 등에 의한 수입으로 세입예산액 343억 69백만원 대비 139.9%인 480억 7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였음.
  - 이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sup>1)</sup>에 따라 시행되어 오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임대 시 적용한 요율의 35~40% 감면)이 7월부터 종료됨에 따른 것임.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표] 코로나19 관련 지하도상가 임대료 지원 또는 감면사업 현황

연도	지원기간	구분	임대료 감면		관리비(청소·경비 인건비) 감면	
			감면금액(백만원)	감면비율(%)	감면금액(백만원)	감면비율(%)
2020	2~7월	1차	9,352	50%	1,147	100%
	9~12월	2차	6,220	50%	765	100%
2021	1~6월	3차	9,484	50%	1,191	100%
	7~12월	4차	9,421	50%	1,195	100%
2022	1~6월	5차	8,243 (감면대상 : 1,534개소, 56%) * 매출총액 : 77,348 (터미널 23,538)	50~60%	1,252	100%
	7~12월	6차	5,292 (감면대상 : 1,768개소, 64%) * 매출총액 : 87,252 (터미널 25,384)	35~40%	1,202	100%
2023	1~6월	7차	5,180 (감면대상 : 1,709개소, 62%) * 매출총액 : 81,768 (터미널 26,579)	35~40%	1,310	100%
합 계			53,192	-	8,062	

○ 다음으로, 도로점용에 따른 도로사용료를 수납받는 ‘도로사용료’는 최근 3년치 평균 징수율(97.8%)을 고려해 예산액을 편성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도로법 제68조2)에 따라 코로나 피해로 인

- 2)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 도로점용료의 25%를 감액하여 징수하기를 협조요청<sup>3)</sup>함에 따라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26억 69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은 예산액 181억 17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158억 89백만원으로 22억 28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표] 참고),

- 이는 도로사업소 및 시설공단의 대행사업비 정산금을 최근 3년 평균액으로 추계(42억 16백만원)하였으나 실제 정산금이 16억 94백만원 감소함에 따른 것임.

- 마지막으로, ‘부담금’은 ‘과주문정3지구 택지개발(15억 2천만원,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및 LH 수서역세권(77억원, 탄천변동축도로 확장)의 교통개선분담금으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로 징수가 결정됨에 따라 92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음.

-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가 크면 재정의 세입·세출 구조가 불안정해지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임.

3)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2023년도 도로점용료 감면 시행 협조(요청)’  
- 국토교통부(2023.5.23.)

- 감면대상 : 서울시도상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 및 개인(자치구 별도시행)
  - ▶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기 감면대상(공익시설) 제외

※ 공익시설 : 도로법 제68조 제3호 및 시행령 제73조 2항에 의한 점용료 2분의 1 감면 적용대상으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전기자동차 충전시설·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표]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 세부내역별 예산액-징수결정액 차이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차액 (B-A)	사유
합계		18,116,961	15,888,540	△2,228,421	
1	재난안전 정책과	-	312	312	○초과근무수당 과지급분 발생 여부와 반납규 모를 예측할 수 없어 예산 미편성하여 차액 발생
2	재난안전 예방과	-	1,017	1,017	○초과근무수당 등 과지급분 발생 여부와 반납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예산 미편성하여 차 액 발생
3	건설혁신과	-	10	10	○출장여비 과지급분 발생 여부와 반납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예산 미편성하여 차액 발생
4	도로계획과	-	29,240	29,240	○승소사건의 소송비용 징수액으로 판결시기와 승패소 여부 및 판결금을 사전 예측할 수 없 어 예산 미편성하여 차액 발생
5	도로관리과	8,833,102	1,032,975	△7,800,127	○ 맨홀정비비 : 도로관리과에서 6개 사업소 부과징수액 포함하여 예산 편성하나, 실제 징수 및 수납은 사업소에서 시행 ○ 공동조사 : 공동조사 용역의 예산을 기준 으로 공동조사 분담비용 예산액 산정하였으 나, 지하시설물의 조사대상 연장 변경에 따 른 분담비율 조정 및 공동조사 용역의 낙찰 률에 따라 변액됨
6	도로시설과	9,283,859	8,270,670	△1,013,189	○ 대행사업비 정산금 세입은 '19년~'21년 평 균으로 추계하였는데 공사 낙찰차액 등 실 제 정산금 반영하여 차이 발생 ※예산 4,216백만원 / 징수결정 2,522백만원 ○ 지하도상가 관리비 등 관련 소상공인 지원 대책 종료(23년 상반기까지 지원, 市 자산 관리과)에 따라 징수결정액 증가 ※ 예산 5,068백만원 / 징수결정 5,725백만원
7	교량안전과	-	1,033	1,033	○초과근무수당 등 과지급분 발생 여부와 반납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예산 미편성하여 차 액 발생
8	도로사업소 (6개)	-	6,553,283	6,553,283	○ 당해연도 불량맨홀 정비비 등으로 도로사업 소는 별도 예산 미편성

## 다) 미수납액

- 재난안전관리실 일반회계 미수납 총액은 202억 45백만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공유재산임대료	4억 49백만원
- 도로사용료	18억 80백만원
- 기타사용료	23백만원
- 기타사업수입	4억 15백만원
- 기타이자수입	52백만원
-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86백만원
- 그외수입	12억 1백만원
- 지난연도수입	145억 77백만원
- 과징금	2억 22백만원
- 변상금	11억 30백만원
- 기타과태료	1억 71백만원
- 부담금	36백만원

-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은 4억 49백만원으로 전년(1억 33백만원) 대비 3억 16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지원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임대료 감면이 상반기에 종료('23년 6월)됨에 따라 임대료 감면으로 감소되었던 미수납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은 145억 77백만원으로 전년(150억 71백만원)대비 4억 49백만원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72%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사유별 현황([표] 참조)를 살펴보면, ‘납세태만’이 일반회계 전체 미수납액 202억 45백만원 중 44.7%인 90억 49백만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재산압류 등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하겠다.

[표] 일반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미수납액		20,245,228	100%
무재산		3,741,321	18.5%
행방불명		1,374,648	6.8%
납세태만		9,048,561	44.7%
폐업 또는 부도		1,225,110	6.1%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14,161	0.1%
소송계류		22,331	0.1%
국외이주		44,975	0.2%
자금압박		215,247	1.1%
기타		3,428,093	16.9%
납기미도래		1,130,780	5.6%

## 라) 정리보류

- 재난안전관리실 일반회계 정리보류 총액은 21억 23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지난년도수입 21억 23백만원

- 일반회계 정리보류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체납처분 중지’가 전체 정리보류 총액 중 5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압류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압류 실익이 없어 그 집행이 무익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한 것이기는 하나,

-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체납처분을 중지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 집행이 불가능해지기 전에 신속히 압류·매각하여 적극적으로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임.

[표] 일반회계 정리보류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정리보류		2,123,206	100%
	체납처분 중지	1,263,193	59.5%
	소멸시효 완성	817,390	38.5%
	행방불명	17,085	0.8%
	무재산	18,350	0.9%
	평가액 부족	6,173	0.3%
	기타	1,015	0.0%

## 2) 세출결산

###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변경	이용/ 이체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3	449,979	1,765	20,244	215 (-215)	104 (-104)	3,095 (-3,095)	471,988	463,878	3,833	1,131	2,702	92	4,185 (0.9%)
2022	662,673	3,470	40,553	- (-)	13 (-13)	90,996 (-66,514)	731,178	726,193	1,765	694	1,071	15	3,206 (0.4%)
2021	465,824	3,267	2,378	144 (-144)	19 (-19)	-	471,469	464,694	3,167	1,625	1,542	3	3,605 (0.8%)

#### 가) 개요

- 예산액 4,499억 79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억 65백만원, 예비비 사용액 202억 44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719억 88백만원으로, 이중 98.3%인 4,638억 78백만원을 지출하고 0.8%인 38억 3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9%인 41억 85백만원이 발생되었음.

#### 나) 집행잔액(불용액)

- 일반회계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은 ‘민자도로사업 평가 및 자문·협상’ 등 8건([표] 참조)으로, 이는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의 대표적인 사례로 신중한 예산 편성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표]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도로계획과	민자도로사업 평가 및 자문·협상	390	190	200	51.3%
2	도로관리과	도로부지 실태조사	40	5	35	88.2%
3	도로관리과	도로점용료 징수 포상	22	9	13	59.8%
4	도로관리과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1,148	259	328	28.5%
5	도로관리과	제설대책추진	13,505	12,616	889	6.5%
6	도로관리과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2,377	1,730	509	21.3%
7	도로관리과	기본경비(도로사업소 6개소)	2,550	2,073	477	18.7%
8	도로시설과	태평로소재 지하연결통로 감정평가	50	14	36	71.9%

○ 먼저, ‘민자도로사업 평가 및 자문·협상’ 사업은 도로분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민자적격성 조사, 실무협상, 회계검토, 운영평가,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3억 9천만원 중 1억 9천만원을 집행하고 51.3%인 2억원을 불용하였음.

- 이는 새검정구파발터널,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실무협상대행기관을 당초 한국교통연구원(KOTI)에서 수수료가 더 저렴한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출예산이 절감되었기 때문인데,

[표] 협상 수수료 단가표(한국교통연구원 vs. 한국개발연구원)

〈표 1〉 2020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업무대행 수수료 기준			2. PIMAC 민간투자사업 업무 수수료기준 요약		
연번	유형	기준 금액 (백만원)	업무유형	수수료 수수료기준	비고
①	사업구조 개선방안 용역	300	감역(민투심)	1,200	
	※ 사업자(안) 검토 시 60% 적용	180	각설(민투심)	2,000	
②	신규사업 제3자 공고문 작성 및 공고 지원	90	철도	12,000	
	※ 공고문(안) 검토 시 60% 적용	54	도로·항만	10,800	
③	사업제안서 평가	○ 1단계(PQ) 평가	환경조사 및 타당성분석 검토	환경	9,000
		○ 2단계 평가	기타(건축 등)	10,000	
④	협약 변경 및 관리 지원	○ 변경실시협약(안) 검토	예타민자 연계검토	3,500	
		○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	비정형	600	
		○ 자금재조달 적정성 검토	경형	100	
		○ 차액보전금 적정성 검토	규모검토(예타연계)	2,000	
		○ 교통량 탄력도 검증	사업계획서 평가	1백만원 이하	4,000
		○ MRG 적정성 검토	2백~3백	7,000	
		○ 도로·항만	6,500		
⑤	사업재구조화 협상 대행	○ 협상 및 협약(안) 작성	협상 및 협약(안) 작성	7,000	
		○ 협상 및 협약(안) 검토	환경·물류	5,500	
⑥	민자도로 운영평가	○ 협상 및 협약(안) 검토	건축	5,000	
		○ 협상 및 협약(안) 검토	실시협약(안) 검토	1,200	
⑦	기타 검토	○ 관리운영 민원사업의 관리이행계획	검토	1,000	
		○ 사업시행조건 조정 (협약검토 포함)	작성	적격성조사 수준	
⑧	기타 검토	○ 자금재조달 이익율 검토	사업검토	9,000	
		○ 자금재조달 이익률 산정 검토	재검토(신규)	5,500	
			재검토(유사)	2,500	
			자금재조달 이익율 검토	6,500	
			자금재조달 변경협약(안) 검토	400	
			자금재조달 이익률 산정 검토	700	
			MRG 등 기타 검토	400	

한국교통연구원(KOTI) 수수료 기준  
실무협상 수수료: 300백만원/건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수료 기준  
실무협상 수수료: 65백만원/건

- 이와 관련하여 시는 예산 편성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부방침에 따라 실무협상 업무대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한국교통연구원(KOTI) 수수료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입장이 변함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 ‘도로부지 실태조사’는 市 도로부지의 무단점유지 및 민원유발 등으로 지적측량이 필요한 부지에 측량비를 지원하여 변상금 부과로 인한 세외수입 증대 및 보도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4천만원 중 88.2%인 3천 5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시는 위임관리기관인 각 자치구에 지적측량을 위한 소요조사

를 실시한 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도로부지 실태조사 비용을 재배정하고 있는데 '23년에는 도로부지 실태조사 건수가 1건(영등포구)만이 요청됨에 기인한 것임.

- 참고로, 최근 5년간 도로부지 실태조사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연평균 4건에 집행률 48%로 매년 불용률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바, 차년도 도로부지 실태조사 계획을 예산편성 전에 사전조사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하는 등의 방안 마련으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표] 최근 5년간 도로부지 실태조사 지원내역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지원건수(건)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2023년	1	40	5 (13%)	35 (88%)
2022년	3	50	18 (36%)	32 (64%)
2021년	4	53	26 (49%)	27 (51%)
2020년	4	58	34 (59%)	24 (41%)
2019년	8	70	48 (69%)	22 (31%)
평균	4	54.2	26.2 (48%)	28 (52%)

-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는 무질서한 거리가게 정비를 통해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도시 미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11억 48백만원 중 28.5%인 3억 28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이는 당초 종로구에 6억 94백만원이 편성되어 저잣거리(노점 41개소)와 종로꽃시장(노점 110개소) 거리가게 2개소에 대한 정

비사업이 추진되었으나 편성된 예산으로 2개소 모두 정비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여 조리시설을 갖춘 노점이 많이 모여 있어 화재 안전사고에 취약한 저잣거리 1개소만 먼저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억 7천만원을 불용하는 한편, 중구·강서구·광진구 거리가게 정비사업에서 4천 6백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른 것임.



종로구 저잣거리 위치도  
(종로40길 남측)



종로구 종로꽃시장 위치도  
(종로40길 북측)

- 이 과정에서 종로구 저잣거리 거리가게 조성을 위한 사전 전기공사 설계용역이 지연되어 12월에서야 계약되고 본 사업은 '24년 7월에서야 착공 예정임에 따라 3억 93백만원을 차년도로 사고이월하였음.
- 거리가게 정비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노점 운영자들의 생계 문제와 직결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바,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한 예산 투입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제설대책추진’은 겨울철 강설 및 도로결빙에 대비해 제설대책 본부(상황실)를 운영하고, 제설장비 및 자재 확보 등 제설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려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135억 5백만원 중 6.5%인 8억 89백만원을 불용하였는데 이 중 5억 96백만원은 재료비이며 1억 75백만원은 시설비임.

[표] ‘제설대책추진’ 사업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통 계 목	예산현액 ①	집행액 ②	집행률 ②/①	차년도이월 ③	불용액	
					④=①-②-③	불용률 ④/①
계	13,505	12,616	93.4	0	889	6.5
사 무 관 리 비	2,921	2,828	96.8	-	93	3.1
공 공 운 영 비	71	69	97.3	-	2	2.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	3	100.0	-	-	-
재 료 비	1,592	96	62.5	-	596	37.4
연 구 용 역 비	140	140	100	-	-	-
전 산 개 발 비	170	170	100	-	-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500	4,500	100	-	-	-
시 설 비	1,360	1,185	87.1	-	175	12.8
자치단체자본보조	2,444	2,444	100	-	-	-
자산및물품취득비	305	282	92.4	-	23	7.6

- 재료비 예산현액은 15억 92백만원으로 37.4%인 5억 96백만원을 불용하였는데 이는 제설제 구매 후 발생한 집행잔액임.
- 도로관리과는 지난 '22년 말 강설 횟수 및 강설량 급증으로 12월까지의 제설제 사용량(17,667톤)이 최근 5년간(17/18년~21/22년) 제설대책기간<sup>4)</sup>에 사용한 제설제 평균사용량(29,561톤)의 60%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 제설제 추가확보가 시급해짐에 따라

4) 서울특별시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 : 11월 15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 당시 23회계연도 예산(안)이 심의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재난 관리기금을 긴급하게 신청<sup>5)</sup>하여 제설제 1만톤을 구매하였으며 이를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자치구에 지원함에 따라 23년도 제설제 구매량이 감소하였음.

[표] 제설제 긴급 지원 내역 ('22년 12월)

(단위: 톤, 백만원)

구분	소계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자치구
지원수량	10,000	2,000	1,000	7,000
지원금액	3,580	700	350	2,530

- 다음으로, 시설비 예산현액 13억 6천만원 중 12.8%에 해당하는 1억 75백만원은 도로사업소의 제설장비 및 전진기지 정비 중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음.
- 참고로, 최근 기후변화로 이례적인 대설·폭설 발생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대응의 구축이 중요해진 가운데 최근 3년간 제설제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표] 참고),

[표] 최근 3년간 제설제 사용 현황

(단위 : 톤, %)

년도	총계	염화칼슘(확보비율)	소금(확보비율)	친환경(확보비율)
'21/'22년	35,294(100%)	12,009(34%)	16,559(47%)	6,726(19%)
'22/'23년	44,470(100%)	16,405(37%)	19,103(43%)	8,962(20%)
'23/'24년	60,819(100%)	25,341(41%)	22,310(37%)	13,168(22%)

5) 재난관리기금 신청: '최근 이례적 폭설에 따른 선제적 제설제 확보 및 보도·이면도로 제설 강화 계획' - 도로관리과-34749, 2022.12.26.

- 매년 제설제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제설제 공급과 비축량 확보가 요구되는바, 철저한 제설대책 마련으로 폭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며
  - 다만, 제설제의 과도한 사용은 도로시설물의 부식이나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을 가속화하는 문제가 있는바, 제설제 살포시기와 살포량에 대한 과학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태평로소재 지하연결통로 감정평가’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현액 5천만원 중 72%인 3천 6백만원을 불용하였는데,
- 이는 지하철역 지하연결통로 미운행 승강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유권과 유지관리 업무를 서울교통공사로 일원화<sup>6)</sup>하고자
  - 市 공유재산인 건대입구역(1번출입구 한림타워) 승강기와 종로3가역(2-1번 출입구 피카디리플러스) 승강기의 소유권을 서울교통공사의 이전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 서울교통공사가 미가동 승강기의 신속한 정상가동을 위해 승강기 내부 기계장치를 신제품으로 교체하여 물품 및 설치비 가액이 명확하므로 굳이 별도의 감정평가가 필요 없어 짐에 따라
  - 감정평가 대상이 승강기 외관 등 시설물로 축소되어 감정평가 수수료가 감소됨에 따른 것<sup>7)</sup>으로,

6) ‘지하철 연결통로 미가동 승강기 정상화 추진 요청’ 도시철도과-20893호 (2022.04.12.)

7) ‘감정평가 결과 송부 및 승강기 관리요청(건대입구역, 종로3가역)’ 도로시설과-8650호 (2023.06.20.)

- 예산 편성 시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를 원활치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됨.

## 다) 예산전용

-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6건에 2억 15백만원으로,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등의 사업에서 발생함.

[표] 예산전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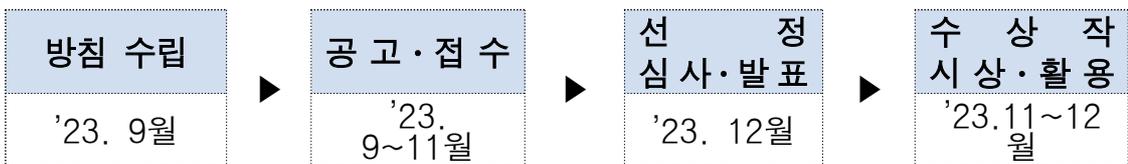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승인 일자	사유
						감액	증액		
1	재난 안전 예방과	재난상황 관리	자율방재단연합회 활동 및 운영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89,875	8,000	-	23-10-06	안전문화 확산 시 민영상공모전 상 금 지급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301-14 기타보상금	-	-	8,000		
2	도로 관리과	사업소 환경개선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201-02 공공운영비	178,255	32,454	-	23-07-27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 부족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4	-	32,454		
3	도로 시설과	도로 시설물 운영(일)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 위탁	308-11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5,690,579	83	-	23-04-24	공유재산 공제회 비 시 직접 납부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 위탁	201-02 공공운영비	-	-	83		
4	도로 시설과	도로 시설물 운영(일)	공동구 관리 위탁	308-11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3,222,015	632	-	23-04-24	공유재산 공제회 비 시 직접 납부
			공동구 관리 위탁	201-02 공공운영비	-	-	632		
5	도로 시설과	도로 시설물 운영(일)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위탁	308-11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7,524,155	1,093	-	23-04-24	공유재산 공제회 비 시 직접 납부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위탁	201-02 공공운영비	-	-	1,093		
6	도로 시설과	도로 시설물 운영(일)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308-11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386,744	172,358	-	23-04-24	공유재산 공제회 비 시 직접 납부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201-02 공공운영비	-	-	172,358		

- ‘자율방재단연합회 활동 및 운영 지원’의 사무관리비 8백만원을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의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했는데,
  - 이는 ‘23년 10월 이태원 참사 1주기 도래, 서울세계불꽃축제 등 큰 규모의 행사 및 축제가 개최 예정임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안전문화확산 시민영상공모전”을 추진해 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음.
  -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나 ‘시민안전문화 활성화’ 사업에 ‘기타보상비’의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여 타 사업으로부터 예산을 융통하여 사용한 것은 의회의 예산 사전심사권을 일부 침해할 소지가 있는바 지양되어야 할 것임.

□ **안전문화확산 시민영상공모전**

- 공모내용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쇼츠 영상 제작
- 참가자격 : 안전에 관심있는 누구나(일반인, 학생, 전문가 등)
- 시상·상금 : 7명(팀) / 총 8,000천원
- 추진절차



- 우수작 활용 서울안전누리, 市블로그 등 SNS, 지역축제 시 재난버스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 공유·확산 추진
  - 공모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 활용

- 다음으로,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사업의 3천 2백만원 전용

은 남부도로사업소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근로자가 촉탁계약직으로 전환('23.1.1.~)되어 기간제 근로자가 증원(1명→2명)됨에 따른 부족한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

○ 마지막으로, '도로시설물 운영' 단위사업에서의 전용 4건은 공유재산을 대행 관리중인 서울시설공단이 가입하여 왔던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공제)'을 시에서 직접 가입하고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공공운영비'로 예산전용 한 것임.

- 이는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sup>8)</sup>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탁(대행)기관이 가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31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sup>9)</sup>에서 이를 지적함에 따라

- 서울시설공단이 대행 관리중인 도로시설과 공유재산(135개소)<sup>10)</sup>에 대한 보험(공제)을 시에서 직접 가입함에 따른 것임.

8)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9) 제31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서울시 전체 대행사업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직접 가입하라고 지적함.

※ 서울시설공단 대행사업 : 16개부서 24개사업 / 공제대상 403건 486억원

10) 도로시설과 공유재산 보험 대상 현황

- 공제대상: 자동차전용도로, 공동구 관리용 건물 및 지하도상가 관련 건물

- 공제금액: 총 135건 174,166천원 (등록재산 건물 135개소, 1,955억원)

라) 이 체

- 일반회계 예산 이체는 11건에 30억 95백만원으로, 2023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상황관리과’ 부서 신설로 부서별 (재난상황관리과, 재난안전정책과, 재난안전예방과) 업무조정에 맞추어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운영 및 개선’,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등의 사업의 담당부서를 변경함에 따라 실 내부에서 이체하였음.

[표] 재난안전관리실 일반회계 예산 이체 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실·본부·국명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감액	증액
1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정책과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운영 및 개선	201-01 사무관리비	27	27	-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상황관리과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운영 및 개선	201-01 사무관리비	-	-	27
2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정책과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운영 및 개선	201-02 공공운영비	473	473	-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상황관리과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운영 및 개선	201-02 공공운영비	-	-	473
3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정책과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운영 및 개선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	100	-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상황관리과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운영 및 개선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	100
4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정책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155	21	-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상황관리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	-	21

[단위: 개소, 천원]

시설공단	재산등록현황		공제합계		비 고
	수량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35	195,503,565	135	174,166	
도로관리처	16	92,116	16	83	자재창고 등 사무실
공동구관리처	8	2,607,570	8	632	사무실
도로환경처	16	1,173,570	16	1,093	직원대기실, 다목적컨테이너 등
상가운영처	95	191,630,309	95	172,358	상가점포 등

연번	실·본부·국명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감액	증액
5	재난안전 관리실	재난안전정책과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	2	-
	재난안전 관리실	재난상황관리과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	2
6	재난안전 관리실	재난안전예방과	재난심리회복 지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82	82	-
	재난안전 관리실	재난안전정책과	재난심리회복 지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	-	82
7	재난안전 관리실	재난안전예방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201-01 사무관리비	40	40	-
	재난안전 관리실	재난안전정책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201-01 사무관리비	-	-	40
8	재난안전 관리실	재난안전예방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201-02 공공운영비	1,793	1,793	-
	재난안전 관리실	재난안전정책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201-02 공공운영비	-	-	1,793
9	재난안전 관리실	재난안전예방과	코로나19 대비 방역물품 비축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534	534	-
	재난안전 관리실	재난안전정책과	코로나19 대비 방역물품 비축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	534
10	재난안전 관리실	재난안전예방과	재난피해자 회복·치유 프로그램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22	22	-
	재난안전 관리실	재난안전정책과	재난피해자 회복·치유 프로그램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	-	22
11	재난안전 관리실	중대재해예방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58	2	-
	재난안전 관리실	재난안전정책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134	-	2

## 마) 변경사용

- 일반회계 예산 변경은 4건에 1억 4백만원으로,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등의 사업에서 발생함.

[표] 변경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유
						감액	증액		
1	재난 안전 정책과	재난관리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201-01 사무관리비	98	4	-	23-11-28	현원 증가로 대민활동비 예산 추가 소요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204-03 특정업무경비	172	-	4		
2	재난 안전 예방과	재난관리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201-02 공공운영비	1,833	40	-	23-03-30	지하철 내 시민안전보험 홍보를 위해 예산 변경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201-01 사무관리비	-	-	40		
3	재난 안전 정책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363	58	-	23-10-27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136	-	58		
4	중대 재해 예방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56	3	-	23-10-06	중대재해감시단 점검반 증대에 따른 전기차 4대 추가 구매분에 대한 유지비용 확보
			기본경비	201-02 공공운영비	7	-	3		

-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사업의 사무관리비(201-01)에서 350만원을 특정업무경비(204-03)로 변경하여 사용했는데, 이는 2023회계연도 특정업무경비 예산편성 당시 5급 이하 현원이 286명이었던 것에 비해 15명이 증가하여 301명이 됨에 따라 12월 대민활동비의 추가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부득이한 조치였다 여겨짐.
-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의 공공운영비(201-02)에서 4천만원을 사무관리비(201-01)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은 지하철 내 출입문에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부착을 위한 조치로,
  - 이는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시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보험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

다는 판단<sup>11)</sup>하에 대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당초에는 편성하지 않았던 홍보비를 변경사용한 것임.

- 시민안전보험의 홍보부족으로 인한 시민의 보험금 신청실적 저조는 작금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시민안전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이 같은 홍보방안에 따른 예산이 고려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으며,
  - 이 역시 당초 본 예산에 없던 새로운 비목(사무관리비)을 신설하여 예산을 융통하여 사용한 것은 의회 사전 예산 심사권을 일부 침해한다 할 것인바 지양되어야 할 것임.
- 재난안전정책과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202-01)에서 5천 8백만 원을 사무관리비(201-01)로 변경해 사용한 것은 부서 업무 자료 인쇄비 등의 지출 증가로 인해 사무관리비 예산이 부족함에 따른 것으로
-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서울 재난안전포럼 개최, 재난 대응 매뉴얼 신규 책자 인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 소모품 구입 등의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 한편, 중대재해예방과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201-01)에서 250만 원을 공공운영비(201-02)로 변경 사용한 것은 중대재해감

---

11) '20~'22년 시민안전보험 지급률(지급액/보험료) : 42%

시단 운영을 위한 차량 정비, 유지비, 전기 충전비 등의 부족분 충당을 위한 것이었는데,

- 이는 중대재해감시단 점검반 규모가 증가<sup>12)</sup>함에 따라 추가구매한 전기차 4대에 대한 차량 유지관리비가 2023년 예산 편성 당시 미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 바) 예비비

- 예비비는 ‘매매 대금 반환 청구’, ‘무상양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총 2건에 202억 44백 만원을 지출하였음.

[표]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	사업	지출액	지출일자	지출사유
도로계획과	매매 대금 반환 청구	13,345	23-03-22	청량리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에 패소함에 따른 판결금 지급
도로계획과	무상양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6,899	23-10-31	장지교 삼거리 입체화 시설공사 완료 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로 무상귀속 시킨 토지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소송에 패소함에 따른 판결금 지급
합계	2건	20,244		

- ‘매매 대금 반환 청구’건은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시로부터 협의계약을 통해 매입했던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620-179번지(도로 416.3㎡) 및

12) ▶ (2022년) 점검반 8→10개반, 인력 18→24명, 차량 8→10대  
 ▶ (2023년) 점검반 10→12개반, 인력 24→25명, 차량 10→12대

전농동 620-181번지(도로 320.5㎡)에 대하여 매매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패소하여 판결금 133억 35백만원을 지급한 것임.

- 사유지였던 해당 사건의 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sup>13)</sup>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하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유상으로 매수하도록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이 매매계약이 무효하다는 법원의 판결로 매매대금 및 이자를 지급한 것임.

[표]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

(단위: 원)

지급대상	총 지급금액 (①+②+③)	① 판 결 금	판결금 이자	
			② '19.8.30.~23.2.14. (5%)	③ '23.2.15~23.3.22. (12%)
청량리제4구역 도시환경정경비 사업추진위원회	13,345,365,209	11,260,740,000	1,951,347,410	133,277,799

- 시가 해당 1심 소송에 패소하고 1심 판결 사항을 반박 또는 번복할 근거가 없어 항소포기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할 수 있음.

13)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생략)

②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 ⑦ (생략)

- 다만, 이 같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유지 양도 시 유상인지 무상인지 관련 법령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처리하여 추후 소송으로 인해 불필요한 이자비용까지 지불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 다음으로, ‘무상양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장지교 삼거리 입체화 시설공사”을 추진하여 건설(2020.3.5.)한 도로를 당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sup>14)</sup>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서울시에 무상귀속하였으나 이후 무상귀속대상이 아니라고 판명<sup>15)</sup>되어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시는 판결금 68억 99백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임.

- 즉, 시가 법률상 원인 없이 무상으로 취득하게 된 토지(도로)에 대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해당 토지 매수 원금에 해당하는 판결금을 지급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문제는 없어 보임.

---

14)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3. 7. 16.>

② ~ ⑨ (생략)

15)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 다252478 판결

## 사) 차년도 사고이월

- 일반회계 차년도 사고이월은 ‘ICT기반 통합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 ‘중대재해 예방활동 및 교육’ 등 총 10건에 27억 2백만원임 ([표] 참조).

[표]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관리부서(과)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재난안전예방과	ICT기반 통합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	207-02 전산개발비	860	335	38.9%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재해 예방활동 및 교육	201-01 사무관리비	225	22	9.7%
중대재해예방과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7-02 전산개발비	589	447	76.0%
중대재해예방과	서울시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201-01 사무관리비	274	21	7.6%
도로관리과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401-01 시설비	1,133	560	49.5%
도로관리과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401-01 시설비	3,900	773	19.8%
도로관리과	도로통합관리 정보시스템 DB갱신	207-02 전산개발비	290	95	32.7%
도로관리과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401-01 시설비	1,379	138	10.0%
도로시설과	가로등 무선원격감시제어 시스템 사업	207-02 전산개발비	1,241	210	16.9%
도로시설과	소공로 및 남대문로7길 일대 보행환경 개선	401-01 시설비	200	100	50.0%
계			10,091	2,702	26.8%

- ‘ICT기반 통합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은 재난관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정보의 적시 제공과 신속한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해 서울시 재난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려는 것으로

당해연도 전산개발비 예산현액 8억 8천만원 중 38.0%인 3억 35백 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이는 당초 과업 요구사항 중 ‘재난약자지원시스템 기능개선 및 개발’과 관련하여 재난약자(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정보구축이 필요했으나 재난약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여 추후 근거가 마련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과업을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

[표] 재난약자지원시스템 기능개선 및 개발

요구사항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	재난약자지원시스템 기능개선 및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재난약자지원시스템 기능개선 및 개발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약자정보 관리 기능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에서 관리할 재난약자의 범위와 유형을 선정해야 함</li> <li>- 개인정보보호법 검토를 통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li> <li>- 재난약자정보 문서 Upload, 직접등록 기능 구현</li> <li>- 지도기반의 재난약자 위치정보 표출</li> </ul> </li> <li>○ 지킴이정보 관리 기능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에서 관리할 지킴이의 범위와 유형을 선정해야 함</li> <li>- 지킴이 정보 문서 Upload, 직접등록 기능 구현</li> <li>- 지도기반의 지킴이 위치정보 표출</li> </ul> </li> <li>○ 문자발송 기능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약자, 지킴이에 SMS 발송 기능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개선</li> </ul> </li> <li>○ 지킴이활동관리 기능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자치구에서 지킴이 활동정보에 등록·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 개발</li> <li>- 지킴이 활동정보 문서 Upload 기능 구현</li> </ul> </li> <li>○ 사용현황 및 이력이 관리되어야 함</li> <li>○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함</li> <li>○ 시스템 부하를 최소화하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사용하도록 구현해야 함</li> <li>○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업무지침서)를 마련해야 함</li> </ul>
산출정보	○ 서울시 SW개발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 '23년 11월 과업내용 변경이 결정되고 당초 해당 과업과 시스템적으로 연계 예정이었던 포털시스템 구성, 정보의 등록 및 관리, 홈페이지 및 서울안전앱의 디자인의 변경 마무리를 위해 과업 준공을 48일 연장(당초: '23.12.14. → 변경: '24.1.31.)했기 때문임.
- 동 사업의 해당 과업이 재난약자를 별도로 관리하여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려 했던 공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해 사전검토가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으므로 주위가 당부된다 하겠음.
-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은 서울시도 내 7개소<sup>16)</sup> 방음벽 교체 및 신설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당해연도 예산현액 39억원 중 19.8%인 7억 73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사고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중랑구 신현초등학교 방음벽 설치'는 도로점용허가를 위한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23.6월~10월) 및 심의<sup>17)</sup>로 공사가 지연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확보를 위해 겨울방학 기간 내 공사실시를 요청하는 관계기관(신현초등학교)과의 협의에 따라 4억 58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 '노원구 수락초·중학교 방음벽 교체'는 2023년도 제1회 추경에

16) 2023년도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7개소: (성동구) 경일초등학교, (광진구) 광양중·고등학교, (중랑구) 신현초등학교, (성북구) 솔샘로102, (노원구) 녹천초등학교, 노일초등학교, 수락초·중학교

17)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 23.06 ~ 10.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심의 : 통과(특이사항 없음)

서 신규편성되어 실시설계가 12월에 준공함에 따라 본공사 시행을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3억 15백만원을 이월하였음.

- 동 사업은 도로와 근접한 학교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개선을 위해 도로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음벽을 신설·교체하는 사업인만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음.

○ ‘가로등 무선원격감시제어 시스템 사업’은 전산개발비 예산현액 12억 41백만원 중 16.9%인 2억 1천만원을 사고이월했는데,

- 당초 ‘가로등 점소등시스템 개선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당해연도 내 완료할 예정('23.12.)이었으나 용역수행 중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기능추가를 위해 과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준공이 연기('24.3.14.)되어 이월한 것임.

**[가로등 점소등시스템 개선(SW개발)]**

- 사업명 : 가로등 점소등시스템 개선(SW개발)
- 사업기간 : 2023. 1. ~ 2024. 4.
- 사업비 : 1,168백만원 (SW개발 1,131, 정보시스템 감리 37)
- 사업대상 : 자치구(25), 도로사업소(6), 서울시설공단 / 시도상 가로등
- 사업내용
  - 클라우드(CLOUD) 기반 지능형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구축
    - 가로등 통합 점·소등 제어 및 점·소등 상태 모니터링(32개기관, 약28만개)
    - 날씨(조도), 교통정보 연계하여 스마트 가로등 관리(자동 점·소등, 조광제어)
    - 가로등 통합DB(위치정보, 이력관리, 운영통계 등) 및 운영정보 대시보드 공개
  - 가로등 점멸기 서울형 표준 통신규약(프로토콜) 개발
    - 기존 가로등 무선원격감시제어 시스템과 연동·호환 API 구성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원격점검 정보연계 추진(분전함 3,000개)
    - 향후 다양한 스마트장치와 연동, 호환,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기능추가 요청사항 ('23.11월 과업변경, SW과업심의위원회 심의)
  - 1) 남산 가로등 관제센터의 기존 운영시스템과 연계개발 기능 추가

- 2)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로드맵에 따라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기술 적용을 위한 기능개발 추가
- 3) 화면 디자인 및 대시보드 검토,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기능개발 추가
- 4) 데이터센터 입주검토 결과, 보안 강화를 위해 응용 기능개발 추가
- 5) 서울형 가로등 점멸기 표준 프로토콜 확정, 관련기능 변경 및 추가
- 6) 한국전기안전공사, 교통정보연계, 문자발송서비스 관련 기능 추가

○ 마지막으로, ‘소공로 및 남대문로7길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시설비는 당해연도 예산현액 2억원 중 50%인 1억을 사고이월했는데,

- 동 사업은 소공로 및 남대문로7길 일대 소공지하도상가 출입구로 인한 보행공간이 협소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3년도 제1회 추경에서 신규편성한 후,
- '23년 9월 용역을 계약하고 착수하였으나 준공기한('24년 3월)이 도래하지 않아 사고이월한 것이며, 현재 용역수행 중 유관기관(경찰청, 중구 등)과의 협의 의견 검토가 지연되어 용역기간을 '24년 6월로 연장('24.3.11 → '24.6.9.)하였다가 보행환경 개선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에 기간이 소요되어 9월로 추가 연장('24.6.9. → '24.9.8.)한 상태임.
- 이처럼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가급적 추경예산 편성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시급성으로 부득이 편성해야 할 경우 차수별 계약 등을 통해 연내 소진이 가능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는 노력이 요구됨.

## 나. 교통사업특별회계

### 1) 세입결산

####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23	0	0	9,220	9,220	0	0	100.0%
2022	0	0	0	0	0	0	-
2021	0	0	0	0	0	0	-

#### 가) 개요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나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15억2천) 및 LH 수서역세권(탄천변동축도로 확장, 77억) 교통개선분담금으로 92억 20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92억 20백만원 전액 수납하였음.

### 2) 세출결산

####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변경	이용/ 이체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3	7,938	19,069	-	-	-	-	27,008	16,286	5,288	-	5,288	-	5,433 (20.1%)
2022	39,641	4,055	-	-	124 (-124)	-	43,696	24,233	19,069	4,503	14,566	-	393 (0.9%)
2021	17,300	7,812	-	-	11 (-11)	-	25,112	20,664	4,055	800	3,255	-	394 (1.6%)

## 가) 개요

- 예산액 79억 38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90억 69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70억 8백만원으로 이 중 60.3%인 162억 86백만원을 지출하고 19.6%인 52억 88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0.1%인 54억 33백만원이 발생되었음.

## 나) 집행잔액 (불용액)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불용률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사업은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입체화(교통개선분담금 계정)’와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교통개선분담금 계정)’ 2개 사업임([표] 참조).

[표]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도로계획과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입체화 (교통개선분담금 계정)	10,273	8,301	1,972	19.1%
2	도로계획과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교통개선분담금 계정)	3,914	270	3,457	88.3%

-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입체화(교통개선분담금 계정)’ 사업은 제2자유로 종점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월드컵 아파트 3단지 앞 교차로 신호연동, 월드컵 지하차도 설치, 구룡사거리 평면확장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102억 73백만원 중 19.1%인 19억 72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이는 ‘월드컵 지하차도’ 공사비 중 잔여액(6억 57백만원)과 ‘구

통사거리 평면확장' 공사비 증 잔여액(10억원), 감리비 불용액(3억원) 등의 발생에 따른 것임.

- 이 중 '구룡사거리 평면확장'과 관련하여 당초 구룡사거리를 입체화하려던 것을 설계과정에서 평면확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이 필요해졌으며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절차가 예상('23.2월)보다 6개월 지연되었고
- 고양시의 실시계획인가 및 하천점용허가 등의 사전절차 이행이 당해연도에 완료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착공 역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 편성했던 공사비 전액(10억원)을 불용처리한 것임.
- 이처럼 설계과정에서 당초 기본계획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추진을 상당히 지연시킴은 물론 사업 부대비용이 늘어나는 등의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바,
- 사업 기본계획 단계에서 보다 신중하고 과학적이며 관련 의견수렴 등을 충분히 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표] 구룡사거리 입체화 vs. 평면화

구분	입체화	평면화
개요	가양대교→운정 방향 좌회전 2차로 입체화	가양대교↔운정 좌회전 3차로 평면교차
개요도		
개선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체도 : 378.3초/대 → 82.4초/대</li> <li>서비스수준 : LOS"FFF" → LOS"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체도 : 378.3초/대 → 72.1초/대</li> <li>서비스수준 : LOS"FFF" → LOS"E"</li> </ul>
주요 공사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룡교확장 : 280m</li> <li>신설Ramp교 : 280m</li> <li>토공부확장 : 130m</li> <li>RC 옹벽 : 130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룡교확장 : L=300.0m , 평균B=6.0m</li> <li>토공부확장 : 505m</li> <li>옹벽 : 70m</li> </ul>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비 : 243.0 억원 (공 184억원, 보 59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비 : 100.2 억원 (공 95.1억원, 보 5.1억원)</li> </ul>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회전입체(고가) 통과후 신호교차로 (주민센터앞) 연속류 효과 저감 → 본선합류후 260m 지점 신호교차</li> <li>강변북로(구리방향), 가양대교 이용차량 덕은지구 진입 곤란 → 우회거리 약 560m(U턴)</li> <li>도심지 주거지역 인접지 고가차도 설치에 따른 민원발생(마포구청 의견)</li> <li>교차로 운영중 교량 및 교각 공사에 따른 교통피해 우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개차로 확장 통한 평면교차로 개선으로 비용 대비 교차로 개선효과 최대 → 지체도 72.1초/대</li> <li>강변북로(구리방향), 가양대교 이용차량 덕은지구 진입 용이 → 국방대학교앞 교차로에서 좌회전 가능</li> <li>고가차도 미설치로 민원발생 배제</li> <li>공사중 교통소통 원활</li> </ul>
검토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역교통개선대책은 도심지 주거지역 인근 고가차도 설치로 민원발생과 덕은지구 진출입 차량의 이용 불편이 예상되며 투자비용대비 개선효과가 보통임.</li> <li>따라서 최소투자로 최대 개선효과를 나타내는 기본설계(평면교차 확장안, 가양대교 → 운정방향 좌회전 3차로)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li> </ul>	

-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교통개선분담금 제정)’사업은 서울 동남권 대규모 개발에 따른 장래교통수요 증가 대비 및 송파대로,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탄천변 동측도로를 구조개선하려는 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39억 14백만원 중 88.3%인 34억 57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이는 당해연도 예산이 우선사업추진구간인 1구간(올림픽훼밀리 아파트~광평교사거리, 0.6km)의 공사비(31억 57백만원) 및 감리비(3억원)를 편성한 것이었으나
- '23.9월 실시설계 결과 안전시설(침수, 화재) 추가, 옹벽기초 형식 및 교통처리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당초 투자심사('17년) 대비 30% 이상 증액(370억원→644억원)되어 타당성재조사 등 사전절차 재이행을 진행하면서 공사를 발주하지 못했기 때문임.

[표] 총사업비 증액 내역(370억원 → 644억원, 증액 274억원)

공종	변경내용	증액(억원)
토공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제방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가교→가도 변경	24.4
지하차도	연장(250m→275m)증가 및 지반조사 결과 반영	53.3
포장공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가도로 변경되어 포장물량 증가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 작업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포장공법 변경	16.1
부대공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반영(방음벽3→4m), 안전관리비 증가	20
조경공	도시숲위원회 심의결과(조경수종 다양화) 및 주민편의시설 확대	11.3
전기공	도시터널 방재지침 및 침수재해 대책 강화로 인한 안전시설물 추가(피난대비설비, 경보설비 등)	15.8
폐기물	폐기물처리비 증가	13.8
설계비 및 감리비	공사비 증액에 따른 설계감리비 증액	17
물가상승률	'17년→'23년. 27.6%	102
합계		273.7

- 동 사업은 '06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고, '07년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가 지역주민의 도로 전면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조성 요구 민원으로 노선계획 변경 및 투자심사 이행을 위해 '12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이 일시 중지된 바 있으며,

- 이후 '16년 말 노선계획을 재검토하여 '17년부터 사업의 시급성, 구간별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1구간과 2구간으로 분리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우선추진구간인 1구간은 '23.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 2구간은 '21.10월 투자심사 결과, 경제성이 부족( $B/C=0.33$ )한 것으로 나타나 재검토 통보를 받고 '22.5월부터 타당성재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24.10월 완료예정)임.

#### ◆ 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1구간 : 올림픽훼밀리아파트~광평교사거리 0.6km]

- '17.04.~'21.05. : 기본설계 완료
- '18.04.~'20.09. :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주민투표로 기본설계안 확정
  - 총 세대 기준 54.1%, 투표세대 기준 87%
- '21.05.~'23.09. : 실시설계 완료
  - 총사업비 30%이상 증액으로 타당성재조사 대상(370→644억)
- '23.12. : 타당성재조사(LIMAC) 업무약정 체결
- '24.05. : 타당성재조사(LIMAC) 완료
- '24.06. : 투자심사
- '24.07. : 공사발주(추경확보 시)

[2구간 : 광평교사거리~삼성교 복단 4.3km]

- '20.01.09.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1.08. : 타당성재조사(LIMAC) 완료
- '21.10. : 4차 투자심사(재검토 : 경제성 부족 및 사업비 절감방안 검토)
  - 연간 100억원 수준의 편익 대비 총사업비 약 4,200억원 수준으로  $B/C(0.33)$  낮음
- '22.05.~ :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중('24.10월 완료예정)

- 따라서, 동 사업이 개시된 '0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업 중단,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상당 기간 지체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산 편성에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다) 예산전용 : 해당없음

라) 이체 : 해당없음

마) 변경사용 : 해당없음

바) 예비비 : 해당없음

사) 차년도 사고이월

- 교통사업특별회계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교통개선분담금 계정)’사업 등 5건, 52억 88백 만원을 차년도로 사고이월하였음.

[표]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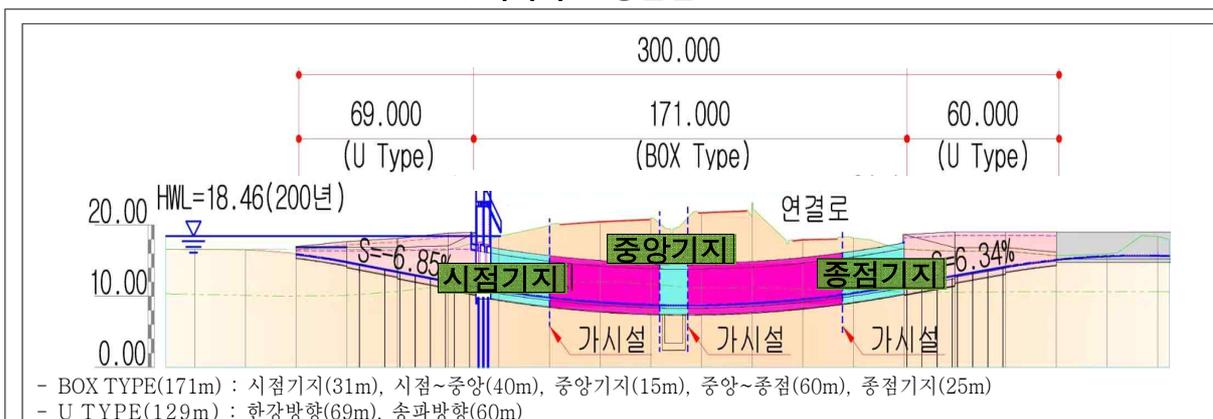
관리부서(과)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로계획과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교통개선분담금 계정)	401-01 시설비	3,531	187	5.3%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교통개선분담금 계정)	401-01 시설비	9,080	2,097	23.1%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교통개선분담금 계정)	401-03 시설부대비	14	4	30.0%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교통개선분담금)	401-01 시설비	2,700	2,700	100.0%

관리부서(과)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교통개선분담금)	401-02 감리비	300	300	100.0%
계			15,625	5,288	33.8%

○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교통개선분담금 계정)’사업은 올림픽대로 잠실대교 남단IC와 지역간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인터체인지 내 연결로를 추가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설비 예산현액 90억 8천만원 중 23.1%인 20억 97백만원과 시설부대비 예산현액 1천 4백만원 중 30%인 4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이는 지하차도 비개착 강관공사(100m)와 관련해 설계 당시와 지층구조가 상이(실트질 모래→모래질 자갈층(점착력↓))하여 추진 방법을 변경(종점부 일괄추진(일방향)→종점부+중앙부 양방향(1/2씩) 순차적 추진)하고 중앙부 측 강관추진을 위한 반력벽, 레일 설치 등의 사전공사로 공정이 지연됨에 따른 것임.

< 지하차도 종단면도 >



※ 지하차도 강관 추진방법

당 초	변 경	비 고
종점 >>>>>>>> 중앙	종점 >>>> <<<<< 중앙	종점→중앙 1/2 추진 후 중앙→종점 1/2 추진

- 공사추진 중 현장여건 변화로 추진방법을 변경하게 되고 공정이 순연되어 사고이월하게 된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동 사업이 '14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해 '18년 기본설계, '20년 실시설계를 거쳐 '21.7월 실착공하기까지 이미 상당기간 지체된 상태이므로 현재 목표하고 있는 준공기한('25.11월)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교통개선분담금 계정)' 사업은 영등포로터리의 복잡하고 불합리한 기하구조를 개선(고가철거 포함)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도시경관 등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당해연도 시설비 예산현액 27억원과 감리비 예산현액 3억원 전액을 사고이월하였음.

- 이는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과 그 주변의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도로다이어트 구간)공사' 및 '영등포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등이 동시다발로 추진되고 있어 극심한 교통혼잡을 우려한 영등포구가 착공시기 조정 요청(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104465, 2022.11.29.)을 해옴에 따라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사업의 착공시기를 '24.7월로 연기함에 따른 것으로

-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도로다이어트 구간)' 공사 구간은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공사지점(경인로)과 교통정체 시 서로 우회도로로 이용되는 도로로 1년 이상 동시에 공사가 진행될 경우 극심한 교통체증의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과,

- ‘영등포 빗물펌프장 증설공사’는 ‘24년 착공예정’으로 영등포로터리 하부 하수관 개량공사를 포함하고 있어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사업과 병행추진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 등을 다각도로 고려한 결과임.
- 한편, 당해연도 사고이월 예산 전액(30억원)은 전년도(2022회계연도)로부터 명시이월되어 넘어온 예산이며, 2023회계연도 본 예산 78억 89백만원 역시 당해연도 사고이월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2023회계연도 제1차 추경에서 이미 전액 감추경한 바 있다는 점에서 살펴보면,
-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도로다이어트 구간)’ 공사 착공이 ‘22.12월, ‘영등포 빗물펌프장 증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가 ‘22.12월이기 때문에
- 이들 주변 사업의 추진 준비단계에서 동 사업과 연계하여 교통체증문제, 병행추진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했다라면 불필요한 불용과 사고이월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주의가 당부됨.

## 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1) 세입결산

####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23	3,250	3,250	3,250	3,250	-	-	100%
2022	3,825	3,825	3,825	3,825	-	-	100%
2021	5,113	5,113	5,972	5,972	-	-	100%

### 가) 개요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은 32억 50 백만원으로 이는 '태릉~구리IC 확장 사업'의 국고 보조금으로 전액 수납되었음.

### 2) 세출결산

####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변경	이용/ 이체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3	7,495	4,322	-	-	6 (-6)	-	11,817	733	3,480	3,480	-	3,730	3,874 (32.8%)
2022	3,825	17,184	-	-	-	-	21,009	16,686	4,322	-	4,322	-	71 (0.3%)
2021	44,468	776	-	-	-	-	45,244	28,036	17,184	7,676	9,508	-	25 (0.1%)

## 가) 개 요

- 예산액 74억 95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3억 22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8억 17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7억 33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 8천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2.8%인 38억 74백만원이 발생함.

## 나) 집행잔액(불용액)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불용률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사업은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1개 사업임([표] 참조).

[표]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도로계획과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10,846	46	3,819	35.2%

-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사업은 서울 중랑구와 구리 인창동 간 광역도로(연장 4.78km(서울시 1.38km, 민자 1.77km, 구리 1.63km))를 확장(폭 6→8차로(서울지구간), 폭 4→6차로(구리시 구간))하려는 것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108억 46백만원 중 35.2%인 38억 19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이는 동 사업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sup>18)</sup>에 따라 국고를 지원받는 서울시, 구리시, 그리

18)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고 민자구간으로 이뤄진 광역도로 확장사업에 해당하며 민자구간을 제외한 서울시와 구리시 구간은 연계하여 통합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서울시 구간과 구리시 구간의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가 단계별로 함께 진행되는 것이 원칙<sup>19)</sup>이어서



[그림]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공사 위치도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광역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해당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2. 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 당해 주차장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 2의2. 법 제2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 : 당해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3.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
4.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30퍼센트

19)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조(사업추진 단계별 관리) ① 「국가재정법」 제6조에 의한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관리대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다음의 각호의 단계에 따라야 하며, 각 사업추진 단계별 총사업비의 관리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설사업 및 연구기반구축 R&D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건축사업은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해당한다),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
  2.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정보 시스템 마스터 플랜(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이하 'ISMP'라고 한다), 분석, 설계, 발주 및 계약, 개발, 운영 및 유지관리
- ②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대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따라야 하는 각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 방법, 절차 등은 국가재정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과학기술기본법령, 전자정부법령 등 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당해 연도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의한다.

- 서울시 구간의 실시설계가 '23.5월에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시의 실시설계 준공예정인 '24.8월 이후에나 서울시와 구리시가 함께 타당성 재조사, 총사업비 조정협의 등을 거쳐 '25.9월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한 것임.
- 동 사업이 그간 '16.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후 구리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및 광역상수도 이설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협의와 타당성 재조사('19.11월~'21.8월) 등의 이행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며,
- 현재로서는 구리시 구간의 실시설계 완료('24.8월) 후에도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및 총사업비 조정협의 등으로 원활한 착공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서울시와 구리시 간 보다 긴밀히 소통하면서 각자의 추진여건을 조율하여 효율적이며 탄력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 예산전용 : 해당없음

라) 이체 : 해당없음

마) 변경사용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 변경은 1건에 6백만원으로, '태릉~

구리IC간 도로확장' 사업에서 발생함([표] 참조).

- 이는 동 사업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을 위한 신문공고료(5백 50만원)의 지출이 필요하여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집행한 것임.

[표] 변경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유
						감액	증액		
1	도로계획과	광역도로 건설(광역교통 시설특별회계)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401-01 시설비	6,575	6	-	23-11-02	도시계획시설 (도로,광장) 변경결정을 위한 신문공고료 지출을 위해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예산변경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401-03 시설부대비	-	-	6		

바) 예비비 : 해당없음

사) 차년도 사고이월 : 해당없음

# 라 . 도시개발특별회계

## 1) 세입결산

###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정리보류액(C)	미수납액(A-B-C)	수납률(%) (B/A)
2023	14,459	14,459	37,754	37,754	-	-	100%
2022	98,396	98,396	78,296	78,296	-	-	100%
2021	251,500	251,500	255,500	255,500	-	-	100%

## 가) 개 요

- 도시개발특별회계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세입 예산액을 당초 미 편성했던 것에 비해 200억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했는데, 이는 '22년에 지방채 발행액을 재원으로 추진예정이었던 '강남순환도 시고속도로 건설' 등 4건의 사업에 대하여 그 추진상황을 고려 '22년에 지방채를 일부만 발행하고 나머지는 '23년으로 이월(자금없는 이월)하여 발행함에 따른 것임([표] 참조).

[표] '23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지방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수납액) 차이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	사업명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차이(B)-(A)	비고
총 계			-	20,000	20,000	
1	도로 계획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	490	490	지방채발행은 해당 세출예산사업 집행시기와 연계(이자발생 최소화)되므로,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22년 지방채(세입)을 '23년으로 이월하여 발행하여 초과수납 발생
2		신림~봉천터널 건설	-	60	60	
3		월드컵대교 건설	-	14,460	14,460	
4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	4,990	4,990	

- 여기서, '22년과 '23년의 지방채 계획 대비 실제 발행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22회계연도 지방채 세입은 총 870억원을 편성했으나 사업별 이월액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이월 예정금액 200억원을 제외한 669억원만 '22.12.12일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 '22회계연도에서 '23회계연도로 잔여 지방채 세입 200억원을 자금없는 이월하여 '23.12.12일 지방채를 발행하고 집행을 완료하였음.

[표] '22년과 '23년 지방채 계획 대비 실제 발행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2년		2023년		비고
		계획	발행	계획*	발행	
	<b>소 계</b>	<b>87,000</b>	<b>66,900</b>	<b>20,000</b>	<b>20,000</b>	
1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10,000	9,500	490	490	※ 차액1억원은 자체재원 활용 '870억원-(669억원+200억원)
2	신림~봉천터널건설	22,500	22,400	60	60	
3	월드컵대교 건설	14,500	-	14,460	14,460	
4	국회대로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31,000	26,000	4,990	4,990	
5	양재대로 구조개선	9,000	9,000	-	-	

\* : 자금없는 이월 지방채

- 이 같은 지방채 발행 이월은 자금없는 이월로 당장에는 시 재정에 영향이 없으나 지방채 발행이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경직화, 지방채 상환능력 저하에 따른 재정건전성 저해, 전위효과<sup>20)</sup>에 의한 지출예산의 지속적인 팽창의 위험이

20) 전위효과가설: 전쟁·공황과 같은 비상시에 증액된 조세는 위기가 끝난 후에도 관막효과(瓣膜效果, ratchet effect)로 인해 쉽게 줄어들지 않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데 이용되는 전위효과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 규모를 산정할 때 연내 소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산정하여 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임.

## 2) 세출결산

###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변경	이용/ 이체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3	851,313	120,886	833	800 (-800)	1,146 (-1,146)	-	973,032	801,229	130,406	26,160	104,246	398	41,000 (4.2%)
2022	753,144	80,354	3,470	194 (-194)	956 (-956)	74,796 (-13,709)	898,055	729,961	120,886	23,711	97,175	-	45,835 (5.1%)
2021	876,637	145,241	-	-	1,542 (-1,542)	-	1,021,877	913,125	80,354	16,985	63,369	-	28,398 (2.8%)

### 가) 개 요

- 예산액 8,513억 13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208억 86백만원, 예비비 사용액 8억 33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9,730억 32백만원으로 이 중 8,012억 29백만원을 지출하고 1,304억 6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후 지출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인 410억원임.

(displacement effect)가 나타나게 된다는 피콕(Alan T. Peacock)과 와이즈만(Jack Wiseman)의 가설을 말한다

## 나) 집행잔액(불용액)

- '23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불용액(410억원)과 불용률(4.2%)은 전년도 대비(불용액(458억 35백만원)과 불용률(5.1%)) 다소 감소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불용률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사업을 살펴보면, '도시고속도로 연결로 추가설치' 등 30건임([표] 참조).

[표]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도로계획과	도시고속도로 연결로 추가설치	9,310	8,703	492	5.2%
2	도로계획과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8,600	529	1,148	13.3%
3	도로계획과	구천면길 도로확장	4,889	54	4,835	98.8%
4	도로계획과	현릉로 확장	8,514	2,414	3,691	43.3%
5	도로계획과	동호로~장터길 연결체계 개선	1,000	652	348	34.7%
6	도로계획과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손실 보상	7,520	6,232	1,288	17.1%
7	도로계획과	잠수교 회전교차로 확장	500	124	376	75.2%
8	도로계획과	용비교~강변북로 진입로간 도로개선	100	-	48	47.5%
9	도로계획과	잠수교 전면 보행화	1,000	500	323	32.3%
10	도로관리과	노후 포장도로 정비	100,319	87,229	7,460	7.4%
11	도로관리과	시도 보도 유지관리	35,030	33,236	543	1.5%
12	도로관리과	가공배전선 지중화	27,744	20,889	342	1.2%
13	도로관리과	노면표시 유지관리 사업	16,902	14,517	2,385	14.1%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4	도로시설과	방음판 교체 및 방재시설 강화	19,156	17,777	1,379	7.1%
15	도로시설과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15,234	13,524	435	2.8%
16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차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	4,262	2,436	584	13.7%
17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터널,복개,지하차도,세척) 일상유지보수	12,855	12,315	540	4.2%
18	도로시설과	월드컵터널 보행환경개선	150	89	61	40.4%
19	도로시설과	도림천4복개 보수	156	107	48	31.0%
20	도로시설과	성내유수지교 보수	2,324	496	383	16.4%
21	도로시설과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량 사업	19,215	16,144	798	4.1%
22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 노후 조명시설 개선	10,723	10,219	505	4.7%
23	도로시설과	도로터널 노후 방재시설 개량	9,001	8,550	401	4.4%
24	도로시설과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2,550	1,821	729	28.6%
25	교량안전과	성수대교 보수공사	2,000	1,555	445	22.2%
26	교량안전과	한강교량 안전난간 설치공사	15,287	10,238	3,103	20.2%
27	교량안전과	염천교 보수공사	631	393	238	37.6%
28	교량안전과	오류철도고가 보수공사	1,815	1,380	435	23.9%
29	교량안전과	노들북고가 보수공사	450	304	146	32.5%
30	교량안전과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11,016	7,172	1,102	10.0%

- ‘구천면길 도로확장’사업은 강동구 천호동 천일초교사거리부터 명일역 간 연장 1,340m 도로 구간의 노폭 협소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이를 확장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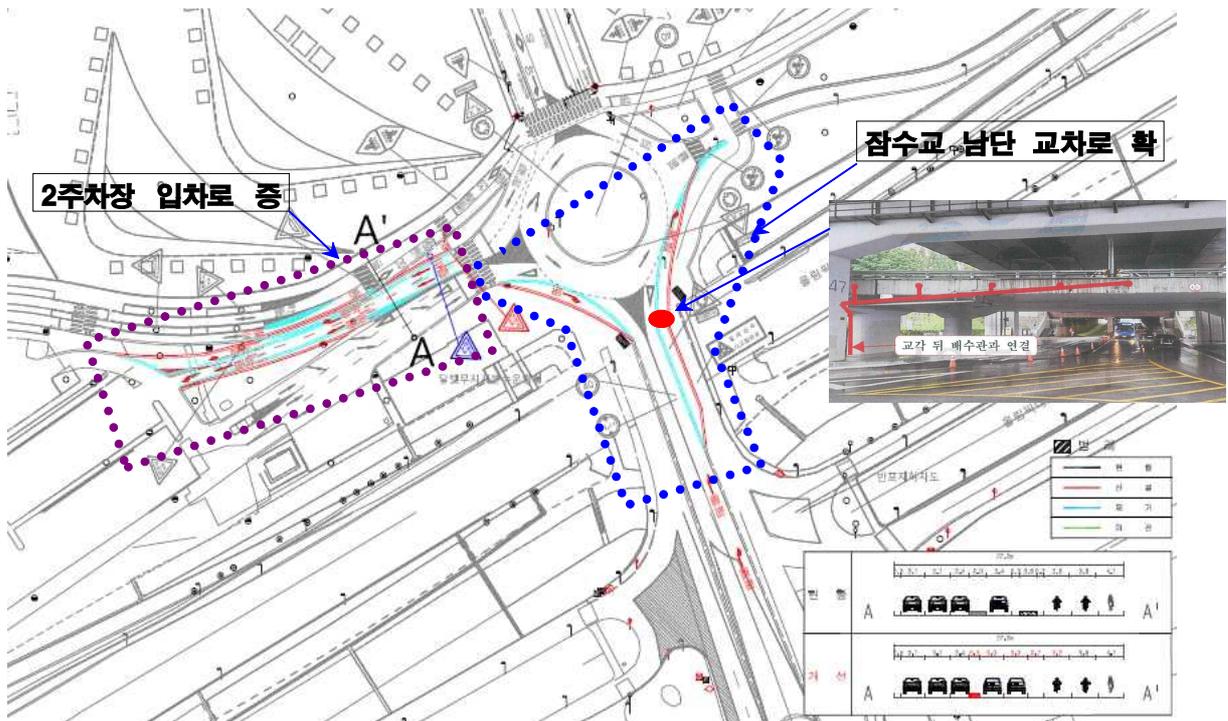
당해연도 예산현액 48억 89백만원 대비 98.8%인 48억 35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이는 당초 천호동 243-190번지 등 20필지(약 660㎡)에 대한 보상을 편성했던 예산이었으나 사업대상지 내 부분철거되는 건축물 소유자 이해설득을 위해 실시한 노후 건축물(10동) 구조안전진단 용역 준공(당초 '23.8월 → 변경 '23.12월)이 늦어져 이후 보상절차가 순연됨에 따른 것임.
  - 동 사업이 '06년에 기본설계용역을 준공하고 '10년에 실시설계 용역 준공 및 실시계획고시(서고시 제2010-174호), '19년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년에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감정평가를 완료했으나 보상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주가 행하는 재산권과 공익사업의 필요성 간 절충점을 현명하게 도출하여 용지보상문제로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잠수교 회전교차로 확장'사업은 잠수교 남단 회전교차로의 정체완화를 위해 회전교차로와 연계하여 위치한 지하차도 1개 차선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5억원 중 75.2%인 3억 76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동 사업의 경우 잠수교 남단 회전교차로와 연계된 지하차도 1개 차선을 확장하는 건 이외에 도시교통실(교통운영과) 역시 동 회전교차로 정체완화를 위한 '반포한강공원 주차장 진출입

로 개선' 사업을 당해연도 본예산 사업 중 '도로교통 소통개선' 사업의 시설비 중 1억 53백만원을 투입하여 별개로 추진 하던 중에,

- 이들 두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으며, 도시교통실(교통운영과)이 통합추진을 전제로 설계한 결과 지하차도 1개 차선 확장 건은 1억 2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남,
- 편성예산 총사업비 5억원 중 1억 24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76백만원을 불용한 것임.

잠수교 남단 교차로 차도 확장	반포2주차장 입차로 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차도 → 반포한강공원(최대 폭3.0m, 연장 76m)</li> <li>· 반포한강공원 → 지하차도(최대 폭3.4m, 연장 38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로(폭 3.5m)</li> <li>→ 2차로(폭 6.0m), 연장 95m</li> </ul>



[그림] 잠수교 남단 교차로 부근 교통체계 개요도

- 이처럼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면, 불용율이 과다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실국에서 추진하는 연관 사업들과의 교차 검토도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주의가 당부된다 하겠음.

○ ‘잠수교 전면 보행화’사업은 잠수교를 보행교로 전환하고 문화여가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10억원 대비 32.3%인 3억 23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이는 당초 기획(디자인)공모로 8개팀을 선정하여 공모보상금 총 8억원(팀당 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공모 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당선작 수를 5개팀으로 조정함에 따라

- 기타보상금 8억원 중 5억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3억원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낙찰차액 2천 3백만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불용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사업개요〉

- 사업명 :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2. 7 ~ '26. 6
- 사업비 : 32,600백만원
- 사업위치 : 잠수교 및 주변지역 일대
- 사업내용 : 잠수교를 다양한 콘텐츠를 가진 시민문화여가 공간으로 조성
  -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 + 접근성 개선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2. 8. : 그레이트 선셋 기본구상 발표(시장)

- '23. 2. : 잠수교 추진계획 수립
- '23. 3. : 그레이트 한강 기자설명회
- '23. 5. ~ 9. : 기획(디자인) 공모 (공모공고 '23.7.7~9.12, 결과발표 9.13)
- '24. 2. : 접근성 개선방안 및 사업 분리발주 계획(문화공간 조성, 접근성 개선)
- '24. 2. ~ 4. : 설계공모 공고(문화공간 조성)  
(공모공고 '24.2.29~4.25, 심사 5.8, 결과발표 5.10)
- '24. 4. ~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접근성 개선)
- '24. 6. :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체결 및 착수(문화공간 조성)

- 다만, 기획(디자인) 공모작의 평가 및 선정과 관련하여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 등 전문가집단으로부터 홍수 시 수리학적 영향, 기존 교량 구조 및 기초의 안전성 및 시공성 등의 설계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배제되었다는 논란이 금년 3월부터 최근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 이에 대해 시는 기획(디자인)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의 안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차원에서 선정된 것으로 확정된 안이 아니며, 이후 설계공모 및 실제 설계과정에서 창의적이면서도 실현가능한 설계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임.
  - 따라서, 설계공모 및 설계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잠수교의 심미적 측면뿐만 아니라 안전성 측면도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가 당부됨.
- ‘노면표시 유지관리 사업’은 서울특별시의 노면표시에 대한 법적기준을 충족시키고 시인성 확보로 도로교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169억 2천만원 중 14.1%인 23억 85백만원을 불용하였는데

- 이는 6개 도로사업소 노면표시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낙찰차액 9억 3백만원과 ‘차선 바로 세우기’사업 미집행 예산 14억 82백만원임.
- ‘차선 바로 세우기’ 사업은 서울시 차선 시인성 개선방안<sup>21)</sup> 마련 이후 추가 검토사항을 보완하고자 당초 6개 대상지(서초동, 구의동, 상계동, 갈현동, 무교동, 여의도동)를 선정하고 전 구간에 고성능 차선 적용과 포장정비, 배수성 포장을 적용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나,
- 서초동 구간을 우선 추진한 후 사업효과를 평가하여 확대 추진을 결정하기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시공물량이 축소되어 8억 5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 여기에 더하여 ‘차선 바로세우기(서초동 구간)’ 사업의 발주부서인 남부도로사업소가 실제 소요예산 6억 24백만원을 재배정 받아 11월 공사계약을 체결 후 사고이월 하려던 중에 예산담당관에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고이월을 미승인 처리하고 잔여 필요예산은 '24년도 예산을 활용토록 하면서 결과적으로 총 14억 82백만원을 불용한 것임.
-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2024회계연도 예산을 살펴보면, ‘노면표지 유지관리 사업’ 내에 ‘차선 바로 세우기’라는 세세부 사업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면표

21) 고성능 차선 선도사업 추진계획 시장보고('22.11.30)

- 도로 차선 시인성 개선에 대해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으므로 산발적으로 추진된 사업방식을 집중하여 시민 체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시 유지관리 사업'의 포괄예산을 사용하여 2023년 11월에 계약 체결한 서초동 구간 차선 바로세우기 공사 6억 24백만원은 그대로 집행중에 있어 '24년 7월 준공 예정임.

< 차선 바로 세우기(Line Project) 추진계획 >

○ 중점 추진방안

① 「새로운 재료·시공기술 적극 도입」 하여 차선 시스템 개선

- 로봇 자동 시공기술을 도입하여 문자기호·횡단보도까지 시인성 2배 이상 향상
  - ※ 로봇 시공 : 고성능 재료 사용, 밀그림 없어 2배 빠른 시공, 작업중 사고위험 감소
- 신규 차선(테이프, 돌출, 발광 등) 기술을 시험적용하고 기술검증 후 확대 추진



<인력 시공, 일반 차선>

<로봇 자동 시공, 특수 고휘도 차선>

② 「시·구 협력」 추진하여 종합적·집중적으로 개선하여 시민 체감 극대화

- 기관·부서별 정비를 협력 체계 구축하여 전체 리모델링 사업방식으로 전환
- 인력·장비를 대거 투입하는 집중공사 방식을 적용하여 시민 체감도 대폭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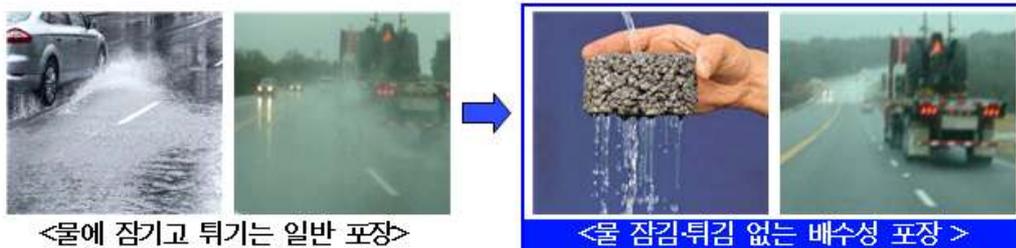


<개별 소규모 공사>

<종합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

③ 「배수성 포장」 도입하여 우천 시 시인성 획기적 향상 및 미끄럼 사고 예방

- 빗물을 도로포장 하부로 신속히 흡수·배수하여 도로·차선 물잠김 방지



<물에 잠기고 튀기는 일반 포장>

<물 잠김튀김 없는 배수성 포장 >

- 이처럼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담당관에서 재정 여건 감안 및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사고이월 대신에 불용처리토록 하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차년도 관련 포괄예산에서 집행토록 유도하는 것은 예산 사용의 건전성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참고로, 상기와 같은 사례는 당해연도 사업 중 동 사업과 함께 서초동에 추진되어 왔던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 사업<sup>22)</sup>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 졌는데 12월 공사계약 체결 즉, 공사비 35억 4백만원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담당관에서 원인행위액 35억 4백만원의 사고이월을 미승인한 후 차년도 관련 포괄예산에서 집행토록 한 바 있음.
- ‘방음판 교체 및 방재시설 강화’는 수락고가차도, 금하지하차도, 상도지하차도 3개소에 설치된 방음터널의 화재에 취약한 아크릴 소재 방음판을 교체하고 방재시설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도 제1회 추경에서 신규편성된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191억 56백만원 중 7.2%인 13억 79백만원을 불용하였는데,
  - 이는 계약심사 절감액 4억 36백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편성 시 물가정보지를 참고로 산출한 방음판 단가(1㎡ 당 107,600원)를

22) ‘서초동 포장도로 및 노면표시 정비계획 (도로관리과-4411호, ’23.9.14.)’

‘서초동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 발주 계획 보고 (도로보수과-12158호, ’23.10.30.)’

설계시 단가가 낮은 실거래가격(1㎡ 당 90,000원)으로 반영하여 발주함에 따라 자재비가 절감(8억 36백만원)되었고

-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한 수락고가차도 방음터널의 방음판을 빛 반사 민원 해소를 위해 빛 저감형 방음판 자재를 채택<sup>23)</sup> 하면서 공사비가 절감(1억 7백만원)됨에 따른 것임.

- 주요 자재인 방음판의 낮은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여 발주하고 현장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는 예산 편성 시점에서 미리 주요 자재에 대한 단가 비교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임.

○ ‘월드컵터널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월드컵터널 내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보행로에 매연차단막을 설치하고자 보차도 분리벽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면서 예산현액 1억 5천만원 중 41%인 6천만원을 불용하였는데,

- 당초 1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과업지시 내용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이 1억 2백만원으로 발주되었으며 낙찰차액 1천 3백만원이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예산편성 시 걱정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23) 빛 저감형 방음판 자재 단가 및 예산 증감액

공종명	규격	단가 (원/㎡당)	예산 증감액
투 명 방 음 판	빛저감방음판	95,000	증)26,720,000
	PC8T	90,000	
방 음 판 하 드 코팅	빛저감방음판*	-	감)133,600,000
	PC8T	25,000	
절 감 금 액			감)106,880,000

\*빛저감 방음판 자재 하드코팅 불필요

-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설치’는 침수위험 지하차도 진입구간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이상폭우로 인한 침수사고로부터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고보조(국비 50% 매칭) 신규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25억 5천만원 중 28.6%인 7억 29백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이중 국비 교부액 3억 64백만원은 2024년도 제1차 추경을 통해 반납할 예정임.
-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당초 행안부 국고보조사업 매칭사업으로 선정 시 행안부에서는 사업비를 차선당 단가 1억 5천만원(국비75백만원, 시비 75백만원)으로 전국 동일하게 적용하여 4개 사업에 대한 국비 12억 75백만원을 교부함에 따라 시비 또한 동일한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표] 2023년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 (지구명)	사업내용	'23년 예산		
		계	국비	시비
신도림 지구	왕복 6차로 진입차단시설 설치	900	450	450
성수대교북단지구	편도 1차로 진입차단시설 설치	150	75	75
수서지구	왕복 6차로 진입차단시설 설치	900	450	450
구룡지구	왕복 4차로 진입차단시설 설치	600	300	300

- 실제 설치과정에서는 2개 차선 이상인 지하차도의 경우 도로 폭 증가에 따른 진입차단설비와 전광표지판 설치비용만 일부 증가할 뿐 CCTV, 전기, 통신, 토목 공사는 차선증가와 상관 없이 1개 차선 공사비와 유사하게 집행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른 것임([표] 참고).

[표] 지하철도 진입차단설비 설치 공사비 내역

(단위: 천원)

구분	1개 차선 1개소	2개 차선 1개소	2개 차선 2개소 (양방향)	비고
계	257,939	269,500	479,900	
진입차단설비	137,479	145,000	290,000	도로 폭에 따라 큰 규격 사용
CCTV	10,000	10,000	20,000	
전광표지판	11,960	16,000	32,000	도로 폭에 따라 큰 규격 사용
전기공사	90,000	90,000	126,000	동일 지하철도 양방향 설치 시 도급비 1.4배
통신공사	8,000	8,000	11,200	
토목공사	500	500	700	

- 참고로, 23년 7월 충북 오송(궁평2)지하차도 침수로 다수의 인명·재산피해가 발생<sup>24)</sup>하여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U자형 지하철도의 경우 방재등급과 상관없이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토록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개정(24.4.5.)됨에 따라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24.4.5.개정

4.9 터널진입차단설비

4.9.3 설치지침

(9) 방재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인 지하철도(중단선형이 U자형인 경우에 한한다)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진입차단설비를 설치한다. <신설>

- ①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안부고시) 제2조 제2호 각 목의 지구 내에 지하철도가 위치한 경우 <신설>
- ② 지하철도 시·종점부(U-타입)에서 인근 하천구역(「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을 말한다) 경계까지의 최단거리가 500m 이내의 경우<신설>
- ③ 지하철도 주변의 지형 특성, 시설물 현황, 개발계획 등을 고려할 때 침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신설>

24) '23.7.15. 충북 오송(궁평2)지하차도 침수

- 미호강 제방 붕괴, 하천수 유입으로 차량침수 17대, 사상자 24명(사망14, 부상10)

- 시는 현재 지침개정에 따른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추가설치 대상에 대해 검토중에 있으며 6월중으로 설치를 완료하여 올 여름 수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입장임.
  - 이번 여름철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설치를 마무리하여 침수피해 방지뿐만 아니라 화재 사고시에 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임.
- ‘한강교량 안전난간 설치공사’는 한강교량 투신자의 자살시도를 차단하고자 한강교량 3개소(잠실대교, 양화대교, 한남대교)에 자살방지 난간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152억 87백만원 중 20.2%인 31억 3백만원을 불용하였는데,
- 이는 공사 발주를 위한 계약심사 절감액 10억 24백만원과 지출잔액 및 낙찰차액 17억 9백만원, 이전비<sup>25)</sup> 잔액 및 안전난간 수량 감소 3억 71백만원 발생에 따른 것으로 계약심사 절감액이 10억 24백만원에 달한다는 것은 예산절감보다는 당초 설계가 과다 설계가 아니었는지 의심되는바, 보다 과학적인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매년 한강교량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증가<sup>26)</sup>하고 있어 투신자살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바, 다양한 안

25) 총공사비 중 도급액과 관급자재비 외 항목으로 지장물 등의 이설, 각종보상비, 분담금 등 발주기관이 시공사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집행하는 항목

26) 한강교량 자살시도자 현황 ('20~'23)

전난간의 형태에 따른 투신 차단율을 모니터링하고 효과가 뛰어난 안전난간을 다른 한강교량에도 확대 설치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난간 외에도 한강교량 자살시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그림] 안전난간 교체 전·후 사진

	설치 전	설치 후	
양화대교			연장 1.66km, 높이 1.65m
잠실대교			연장 2.0km, 높이 1.65m
한남대교			연장 1.5km, 높이 1.7m

합계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자살시도 (명)	3,135	1,035	1,000	626	474
생존구조율 (%)	98.42%	99.71%	99.6%	97.92%	97.26%

## 다) 예산전용

-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전용은 2건에 8억원으로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유지보수 기전시설물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시설물 노후 전력설비 개량’과 ‘마들지하차도 보수’ 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도로기전시설물 공공요금 관리’사업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음.

[표] 예산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승인일자	사유
						감액	증액		
1	도로시설과	기전시설물관리	도로시설물 노후 전력설비 개량	403-02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1,852	427	-	23-10-19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유지보수 기전시설물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전용
			도로기전시설물 공공요금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7,557	-	427		
2	도로시설과	자동차전용 도로 관리	마들지하차도 보수	403-02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3,972	373	-		
			도로기전시설물 공공요금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7,184	-	373		

라) 이 체 : 해당없음

## 마) 변경사용

-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변경은 ‘노들로 구조개선’, ‘동부간선 도로 확장(녹천교~의정부시계)’ 등의 사업 총 6건에 11억 46백만원으로
  - ‘노들로 구조개선’, ‘동부간선도로 확장(녹천교~의정부시계)’, ‘중차량노선 시설물 성능개선’, ‘장월교 개축공사’ 4개 사업

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부족한 감리비 확보를 위해 통계목을 변경하여 집행한 것으로,

- 건설공사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겠으나, 사전에 건설공사의 면밀한 계획 수립 및 신속한 추진으로 사업지연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한편, ‘도로시설물 노후 전력설비 개량’과 ‘한강교량안전난간 설치공사’ 사업은 당초 미편성한 감리비를 편성코자 시설비를 변경사용한 것으로 이처럼 의회 예산안 심사 및 의결 당시 미계상되었던 감리비를 변경을 통해 비목을 신설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임.

[표] 변경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유
						감액	증액		
1	도로 계획 과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 특별)	노들로 구조개선	401-01 시설비	10,648	372	-	23-12-20	본 사업은 '24년 준공 예정으로 '23년 본예산 일부 이월로 부족 감리비 확보를 위한 예산 통계목 변경 처리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 특별)	노들로 구조개선	401-02 감리비	891	-	372		
2	도로 계획 과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 특별)	동부간선도로 확장(녹천교~의정 부시계)	401-01 시설비	23,327	400	-	23-11-10	감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예산 변경사용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 특별)	동부간선도로 확장(녹천교~의정 부시계)	401-02 감리비	1,700	-	400		
3	도로 시설 과	기전시설물 관리	도로시설물 노후 전력설비 개량	401-01 시설비	3,345	15	-	23-10-19	노후 전력설비 개량 감리비 예산 소요에 따른 예산변경
		기전시설물 관리	도로시설물 노후 전력설비 개량	401-02 감리비	-	-	15		
4	교량 안전 과	한강교량관리	한강교량 안전난간 설치공사	401-01 시설비	15,287	71	-	23-12-11	효율적 현장관리를 위한 분야별 기술인 건설사업관리자 추가 투입에 따른 금액 조정
		한강교량관리	한강교량 안전난간 설치공사	401-02 감리비	-	-	71		

연번	부서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유
						감액	증액		
5	교량 안전과	일반교량관리	중차량노선 시설물 성능개선	401-01 시설비	10,335	210	-	23-12-11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 연장으로 감리비 증액
		일반교량관리	중차량노선 시설물 성능개선	401-02 감리비	1,004	-	210		
6	교량 안전과	일반교량관리	장월교 개축공사	401-01 시설비	3,106	78	-	23-11-08	장월교 개축공사 공사기간 연장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 인 투입기간 연장(통계목 변경)
		일반교량관리	장월교 개축공사	401-02 감리비	375	-	78		
총 변경건수: 6건					70,018	1,146	1,146		

## 바) 예비비

- 예비비는 ‘성산대교 성능개선’, ‘한강대교 보수공사’ 2건에 8억 33백 만원을 지출하였음.

[표]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	사업	지출액	지출일자	지출사유
교량안전과	성산대교 성능개선	475	23-06-21	성능개선공사 기간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소송에 일부 패소하여 판결금 및 이자 지급
교량안전과	한강대교 보수공사	358	23-12-29	‘한강대교 남단 보행교(백년다리) 조성공사’의 공사중지 및 타절준공에 대해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함에 따라 판결금 및 이자 지급
합계	2건	833		

- 먼저, ‘성산대교 성능개선’은 시가 발주하여 준공한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한신공영(주)과 흥용종합건설(주)이 원고들의 책임없는 사유로 연장된 1차수 공사기간 197일에 대하여 간접공사비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 피고인 서울시가 일부패소하였으며 시는 쟁점에 대한 추가반박 자료가 없어 항소실익이 없고 소송 장기화에 따른 지연손해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여겨 항소 포기를 결정함에 따라 판결금 4억 75백만원(판결금 3억 72백만원 + 이자 1억 3백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임.

○ 다음으로, ‘한강대교 보수공사’<sup>27)</sup>전은 ‘한강대교 남단 보행교(백년다리)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시가 공사를 중지하고 타절준공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원고인 남양건설과 청미건설이 공사 중지 및 타절준공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 이에 재판부가 실질적인 착공전에 공사가 정지되었고 기성금 및 기지급받은 투입비용을 고려하여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액 및 지연배상금의 70%만을 인정함에 따라 시는 항소를 포기하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하여 판결금 3억 58백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임.

## 사) 차년도 사고이월

○ 도시개발특별회계 차년도 사고이월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 사업의 시설비 등 총 79건에 이월금액은 예산현액(9,730억 32천만원) 대비 10.7%인 1,042억 46백만원임([표] 참조).

27) ‘한강대교 남단 보행교(백년다리) 조성공사’가 ’22년 타절준공으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유사(인근)사업인 ‘한강대교 보수공사’에 예비비를 편성함.

[표]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관리부서(과)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로계획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	401-01 시설비	15,552	650	4.2%
도로계획과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	401-01 시설비	10,295	6,234	60.6%
도로계획과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	401-02 감리비	750	110	14.7%
도로계획과	사고위험 도시고속도로 구조개선	401-01 시설비	671	295	43.9%
도로계획과	사고위험 도시고속도로 구조개선	401-02 감리비	120	22	18.1%
도로계획과	도시고속도로 연결로 추가설치	401-02 감리비	1,070	115	10.7%
도로계획과	경부간선도로 재구조화	401-01 시설비	500	111	22.2%
도로계획과	강변북로 연결체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401-01 시설비	350	200	57.1%
도로계획과	신림~봉천터널 건설	401-01 시설비	31,638	14,687	46.4%
도로계획과	신림~봉천터널 건설	401-02 감리비	2,652	436	16.4%
도로계획과	월드컵 대교 건설	401-01 시설비	41,609	3,200	7.7%
도로계획과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401-01 시설비	5,838	3,940	67.5%
도로계획과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401-02 감리비	598	310	51.8%
도로계획과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401-01 시설비	7,700	6,552	85.1%
도로계획과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401-02 감리비	900	371	41.2%
도로계획과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401-01 시설비	14,587	6,815	46.7%
도로계획과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401-02 감리비	822	100	12.2%
도로계획과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01-01 시설비	72,168	1,263	1.8%
도로계획과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01-02 감리비	3,608	215	6.0%
도로계획과	노들로 구조개선	401-01 시설비	16,149	7,500	46.4%

관리부서(과)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로계획과	노들로 구조개선	401-02 감리비	1,503	515	34.3%
도로계획과	천호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	401-01 시설비	4,307	2,820	65.5%
도로계획과	천호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	401-02 감리비	755	44	5.9%
도로계획과	양재대로 구조개선	401-01 시설비	19,268	130	0.7%
도로계획과	봉화산(중화역 주변) 도로확장	401-01 시설비	11,266	666	5.9%
도로계획과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401-01 시설비	368	218	59.2%
도로계획과	현릉로 확장	401-01 시설비	7,914	1,809	22.9%
도로계획과	현릉로 확장	401-02 감리비	600	600	100.0%
도로계획과	벚꽃로 확장	401-01 시설비	1,284	1,284	100.0%
도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로 토지보상비	401-01 시설비	43,674	13,541	31.0%
도로계획과	서울시 도로확충 및 환경개선 종합 검토	401-01 시설비	557	80	14.3%
도로계획과	성동교 확장	401-01 시설비	3,000	1,100	36.7%
도로계획과	성동교 확장	401-02 감리비	600	290	48.3%
도로계획과	신당역~신당지하상가 연결통로 설치공사	401-01 시설비	2,262	322	14.2%
도로계획과	신당역~신당지하상가 연결통로 설치공사	401-02 감리비	178	78	43.8%
도로계획과	도로건설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	401-01 시설비	140	22	15.8%
도로계획과	중랑천 보행교량 건설공사	401-01 시설비	600	2	0.4%
도로계획과	서울특별시도 도로대장 정비 용역	401-01 시설비	300	156	52.1%
도로계획과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체계 개선	401-01 시설비	100	44	43.7%
도로계획과	월계로(창문여고~북서울꿈의숲) 지하도로 건설	401-01 시설비	200	112	56.0%
도로계획과	신길~여의도 일대 교통소통 개선	401-01 시설비	300	215	71.5%
도로계획과	백사터널 건설	401-01 시설비	300	168	56.1%

관리부서(과)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로계획과	용비교~강변북로 진입로간 도로개선	401-01 시설비	100	53	52.5%
도로계획과	내곡IC 연결로 신설	401-01 시설비	50	25	49.8%
도로계획과	테헤란로 지하 물류 인프라 건설	401-01 시설비	200	195	97.5%
도로계획과	상계IC 건설	401-01 시설비	300	168	56.1%
도로계획과	잠수교 전면 보행화	401-01 시설비	200	177	88.4%
도로관리과	노후 포장도로 정비	201-01 사무관리비	72	10	13.6%
도로관리과	노후 포장도로 정비	207-02 전산개발 비	495	170	34.3%
도로관리과	노후 포장도로 정비	401-01 시설비	95,123	3,769	4.0%
도로관리과	노후 포장도로 정비	401-02 감리비	2,920	25	0.8%
도로관리과	노후 포장도로 정비	405-01 자산및물 품취득비	620	294	47.4%
도로관리과	시도 보도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34,813	1,102	3.2%
도로관리과	시도 보도 유지관리	405-01 자산및물 품취득비	180	149	82.8%
도로관리과	가공배전선 지중화	401-01 시설비	27,744	2,376	8.6%
도로시설과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401-01 시설비	5,234	1,275	24.4%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	401-01 시설비	4,262	1,242	29.1%
도로시설과	교량터널 모니터링센터 운영	401-01 시설비	1,157	427	36.9%
도로시설과	육천북개2구간 보수	401-01 시설비	99	82	83.7%
도로시설과	불광천북개1구간 보수	401-01 시설비	602	358	59.4%
도로시설과	성내유수지교 보수	401-01 시설비	2,324	1,445	62.2%
도로시설과	도로기전시설물 일상유지보수	401-01 시설비	3,270	60	1.8%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 경관조명 유지보수	401-01 시설비	1,727	62	3.6%

관리부서(과)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로시설과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량 사업	401-01 시설비	19,212	2,273	11.8%
도로시설과	지하차도 노후 배수시설 개량	401-01 시설비	2,809	255	9.1%
도로시설과	도로터널 노후 방재시설 개량	401-01 시설비	7,327	49	0.7%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 노후 전력설비 개량	401-01 시설비	3,701	176	4.8%
도로시설과	<b>한강 경관조명 희망·기원 프로젝트</b>	<b>401-01 시설비</b>	<b>118</b>	<b>58</b>	<b>49.4%</b>
교량안전과	성산대교 성능개선	401-02 감리비	1,553	563	36.3%
교량안전과	한강교량 안전난간 설치공사	401-01 시설비	15,216	1,946	12.8%
교량안전과	중차량노선 시설물 성능개선	401-01 시설비	12,999	2,208	17.0%
교량안전과	중차량노선 시설물 성능개선	401-02 감리비	1,660	354	21.3%
교량안전과	기아대교 보행환경 개선	401-01 시설비	160	145	90.9%
교량안전과	성산2교 보수공사	401-01 시설비	45	38	83.6%
교량안전과	겸재교 방음판 교체공사	401-01 시설비	1,447	1,181	81.6%
교량안전과	서소문고가 개축(성능개선)공사	401-01 시설비	1,457	446	30.6%
교량안전과	서소문고가 개축(성능개선)공사	401-02 감리비	148	25	16.6%
교량안전과	모래내고가 방호울타리 개선공사	401-01 시설비	1,489	982	66.0%
교량안전과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401-01 시설비	11,016	2,742	24.9%
<b>계</b>			<b>588,903</b>	<b>104,246</b>	<b>17.7%</b>

-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사업은 내부순환로(월곡IC)의 대기행렬을 감소시키고 하부 교차로 교통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폭 5.9m, 연장 429m의 연결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당해 연도 시설비 예산현액 102억 95백만원 중 60.6%인 62억 34백만원과 감리비 예산현액 7억 5천만원 중 14.7%인 1억 1천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이는 공사장 인근 아파트(코업스타클래스) 및 종점부 인근 주민들의 소음, 비산먼지 등에 대한 집단민원 처리<sup>28)</sup>를 위한 실시설계('23.11월) 이행 및 여름철 폭염 및 폭우로 강교 상부공중 작업중지('23.7.~'23.9) 등으로 공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임.

#### □ 민원처리 관련 추진경위

- '20.12. : 코업스타클래스 유선 및 현장 민원(소음, 비산먼지 등) 제기
- '21.01. :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 '21.04. :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진정서 접수
- '21.04. : 민원인 및 공사관계자 합동회의 시행
- '21.05. : 시의원 현장방문 민원사항 보고
- '21.09. : 민원사항 검토 합동회의(도로계획과, 토목부, 민원인 등)
- '21.10. : 민원사항 조치계획 알림
  - 진입로 앞 조경(소나무 등), 가로등 설치, 아스팔트 재포장, 주변 보도 재포장(화강석)
- '22.05. : 민원 협의사항 실시설계 착수
- '22.10. : 설계회의 2회(입주민대표, 토목부, 설계사, 시공사)
- '22.11. : 총사업비 변경 검토보고(도로계획과, 민원처리 비용 2,537백만원 반영)
- '23.05. : 주민간담회 실시(설계사항 설명 및 주민요구사항 청취 등)
- '23.11. : 민원 처리 실시설계 완료

- 즉, 집단민원 조치를 위한 추가공사(도로정비, 가로등, 조경 등)에 약 4개월(127일)의 절대공기가 필요하였고, 우천·폭염 등에 따른 강교 상부 작업 불가로 인한 공기지연(55일)을 반영하여 당초 '23.12월이었던 준공기한을 '24.7월로 연장하고 시설비(공사비)와 감리비를 이월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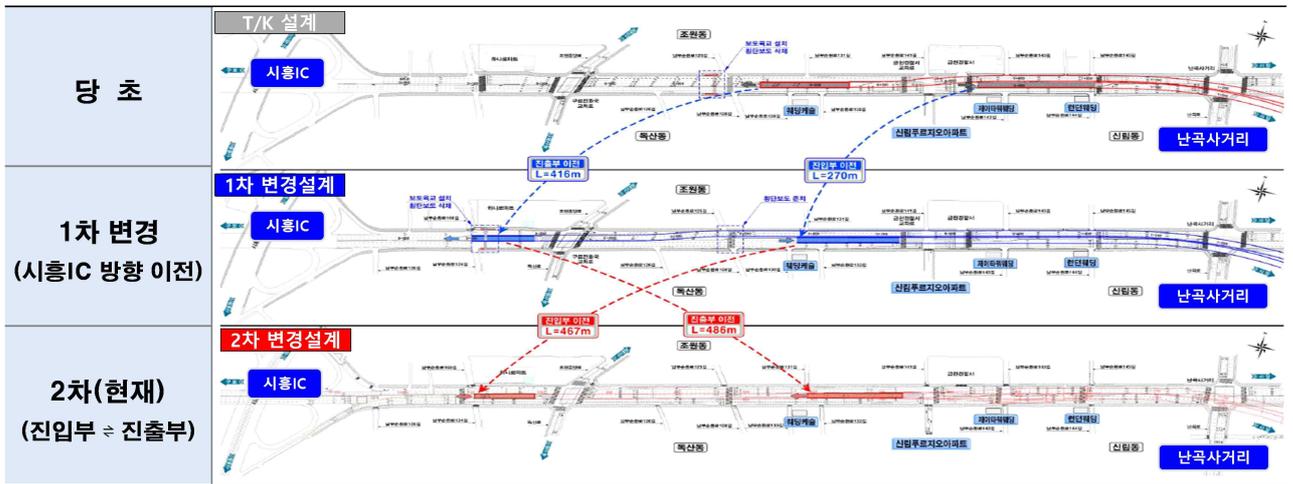
28) 진입로 앞 조경(소나무 등), 가로등 설치, 아스팔트 재포장, 주변 보도 재포장(화강석)  
- 민원처리 비용 2,537백만원

- 동 사업은 민원처리를 위해 공정이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비도 발생한 것으로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발생가능한 민원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 ‘신림 ~ 봉천터널 건설’사업은 남부순환도로와 강남순환도로를 연결하여 남부순환도로의 도로기능을 향상시켜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왕복 4차로, 연장 5.58km의 도로(터널)을 개설하려는 것으로 당해연도 시설비 316억 38백만원 중 46.4%인 146억 87백만원, 감리비 26억 52백만원 중 16.4%인 4억 36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그림] 위치도

- 이는 1공구 지하차도 진출입부 설계변경을 위한 공기적정성 심의('24.1월 완료), 경찰청 규제심의('24.1월 완료), 계약심사('24.6월 예정),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24.6월 예정) 등의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소요로 지하차도 착공 시기가 지연되어 공사비 140억원을 이월하였고,



[그림] 진출입부 변경사항

- 또한, 지하환기소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23.6월)를 거쳐 보상공고('23.9월)를 했으나 토지주인 문화재단의 이사회 의결을 위한 기간소요로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보상비 6억 87백만원을 이월하고 그 외 감리비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4억 36백만원을 이월한 것임.
- 한편, 당해연도 예산 편성 시 설계변경에 따른 필요절차 이행을 위한 소요기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규모의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바,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높여야 할 것임.

-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사업은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과 연계하여 기존 상부의 서부간선도로를 일반도로화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도로로 재편하고 차로수 및 차로폭을 조정하여 자전거도로, 보도, 녹지 등 친환경 가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당해연도 시설비 예산현액 77억원 중 85.1%인 65억 52백만원, 감리비 예산현액 9억원 중 41.2%인 3억 71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이는 조달청 공사발주 지연에 따라 공사계약이 지연되고 이후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를 계기로 한강유역환경청의 치수안전 확보방안에 대한 추가검토 요청이 있어 하천점용허가가 지연되면서 ‘23.9월에 실착공이 이루어짐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임.
- 이처럼,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연초에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협의 진행을 통해 후속 공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성동교 확장’사업은 성동교 북단 성수방면 현 진입도로 구간 의 간섭 및 지·정체를 해소하고 성동소방서의 성수지역 골든타임 내 출동 등을 통해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로를 확장 (폭 7→8차로, 연장 247m)하려는 것으로 당해연도 시설비 예산현액 30억원 중 36.7%인 11억원, 감리비 예산현액 6억원 중 48.3%인 2억 9천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이는 '23.6월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 후 한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경간장과 여유고의 기준 미충족<sup>29)</sup>으로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하천점용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착공이 순연되면서 공사비 일부를 사고이월한 것임.
-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시는 동 사업이 기존 성동교에 1개 차로만 확장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용허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었으나
- '23년 오송지하차도 사고로 인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교량의 경간장 및 여유고에 대한 엄격한 기준 준수를 고수함에 따라 협의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경간장과 여유고를 기준에 맞게 확보하는 일은 현장 여건상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뿐만 아니라 허가가능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입장임.

#### ○ 하천점용허가 협의 추진경위

- '23.06.28. : 하천점용허가 신청(도기본→한강유역환경청)
- '23.07.03.~ : 한강유역환경청 방문 협의(24.5월까지 9차례 방문 협의)
- '23.08.14. : 하천점용허가 신청 보완요청(한강유역환경청→도기본)
  - 확장 교량의 경간장(기준 35.7m, 신청 21.95m)은 13.75m가 부족하며, 여유고의 경우에는 기준(2.0m) 대비 1.92m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23.11.15. : 하천점용허가 보완요청 회신(도기본→한강유역환경청)
  -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보완 내용 및 성동교 기존교량 인상검토서 첨부

29) 확장 교량의 경간장(기준 35.7m, 신청 21.95m)은 13.75m가 부족하며, 여유고의 경우에는 기준 (2.0m) 대비 1.92m가 부족한 상태

- '23.11.30. : 하천점용허가 신청 반려 및 회신(도기본↔한강유역환경청)
  - 기 보완 요청한 사항('23.08.14.)에 대하여 추가 보완 요청 및 조치계획서 제출
- '24.01.22. : 하천점용허가 조속 검토 요청 및 회신(도기본↔한강유역환경청)
  - 하천점용허가 관련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한 검토 추진 의견
- '24.02.16. : 사전컨설팅 감사 자료 제출 협조(도기본→한강유역환경청)
- '24.03.30. :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 감사담당관)
- '24.05.현재 : 환경청 및 환경부 요청사항 보완, 하천점용허가 지속 협의중

- 따라서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한강유역환경청을 적극 설득함으로써 사고이월된 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육천복개2구간보수', '불광천복개1구간보수', '성산2교 보수공사' 3개 사업은 통합발주되어 시설비 예산현액 7억 46백만원 중 4억 78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 '불광천복개1구간 보수공사'를 실시하던 중 유관기관인 난지물재생센터에서 복개구조물의 내부에 설치된 차집관로 내부벽체를 보수<sup>30)</sup>하기 위해 차집관로의 유수 흐름을 불광천복개1구간 공사 구간으로 변경함에 따라 해당 구간의 보수공사 진행이 불가하여 공사가 중지('23.10.23 ~ '23.12.20.)되었고,

### 30) 난지물재생센터 공사 개요

- 공 사 명 : 2023년 난지수계 하수차집시설물 유지보수공사
- 공사기간 : 2023. 4. 19. ~ 2023. 12. 19.
- 공사내용 : 차집 개거수로 보수
- 도 급 사 : 리플래시건설

- 이후 동절기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한 공사중지('23.12.21. ~ '24.02.29.)로 공사기간이 71일 추가연장되었으며 이에 후속으로 계획되어 있던 성산2교 보수공사까지 공사가 지연됨에 따른 것임<sup>31)</sup>.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을 적기에 보수하는 것은 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바,
  - 유관기관과의 공사구간 중복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성내유수지교 보수'는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유수지교의 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을 보수하여 시설물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예산현액 23억 24백만원 중 62%인 14억 45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 이는 실시설계 용역 중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교량받침 설치를 위한 가설지지 구조물의 구조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자문단의 의견에 따라 설계용역이 '23년 9월(당초 7월 준공)로 준공기한이 연기되었으며 이에 공사 착공도 지연된 것에 기인함.

31) '육천복개2구간 보수공사'의 경우 23년 내 완료되었으나 3개의 공사가 통합발주 됨에 따라 준공금 지급이 지연되어 사고이월하였음.

- ‘한강 경관조명 희망기원 프로젝트’는 시설비 예산현액 1억 18백만원 중 49.4%인 5천 8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 동 사업은 서울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2년 신규사업 제안회’에서 시민밀착형 신규사업 분야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시행한 사업으로 당초 LED 조명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치유, 희망메세지를 전달하겠다는 추진목표로 마포대교에 시범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 도시계획국에서 추진 중인 ‘한강변 마스터플랜 수립’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마스터플랜 수립 선행 후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2회계연도 최종예산 1억 5천만원 중 79%인 1억 18백만원을 당해연도로 명시이월한 바 있음.
  - 이후 한강교량 경관조명 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23년 4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거점교량 재선정을 위한 현황 분석 등 과업내용 추가로 준공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5천 8백만원을 사고이월 한 것임.
  - 당초 동 사업의 의회 예산안 심의 당시 서울시의 타 사업과의 중복성과 예산편성의 비용 대비 효과성 지적<sup>32)</sup>에도 불구하고

32) 2022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中 (p.91~p.93)

- 서울시는 2016년부터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코자 ‘한강교량 경관조명 점등확대 추진계획’ 방침을 수립하여 한강교량 27개소에 경관조명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동 사업의 시범설치대상인 마포대교(2006년 경관조명 설치)는 시의 경관조명 점등확대 계획에 따라 2021년도에 8억원의 사업비로 기존의 경관조명을 개선하였으며, 설치대상 3개소(마포대교, 양화대교, 한강대교)의 2021년 유지관리비 지출 예산은 2천 4백만원으로 평균 1개소당 8백만원 가량의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설익은 사업을 강행하므로 인해 결국 당초 목적과 달리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을 위해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바,

**‘한강교량 경관조명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사업기간 : 2023. 4. 11. ~ 2024. 6. 28.
- 계약금액 : 2억 19백만원
- 계약업체 [디자인 80%] 디자인스튜디오라인, (주)누리웍스  
[전기 20%] (주)누리웍스 대표 김광훈
- 과업내용

기본  
계획  
수립

- I. 한강 권역별 계획 수립  
⇒ 주변환경과 유기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권역 설정
- II. 권역별 거점교량 선정  
⇒ 한강 야경의 매력을 돋보이게 할 권역별 거점교량 선정
- III. 다양한 연출조명 프로그램 구성  
⇒ 시간별·시간대별 연출 운영, 체험·참여형 경관조명 등
- IV. 경관조명 통합제어시스템 구축  
⇒ 27개 전 교량을 통합제어하여 조명연출 및 유지관리 효율성 극대화

**설계변경 내용**

- 설계변경 내용 :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서울시 관광인프라 종합계획」 등의 발표로 해당 사업과 연계한 한강 경관조명 개선사업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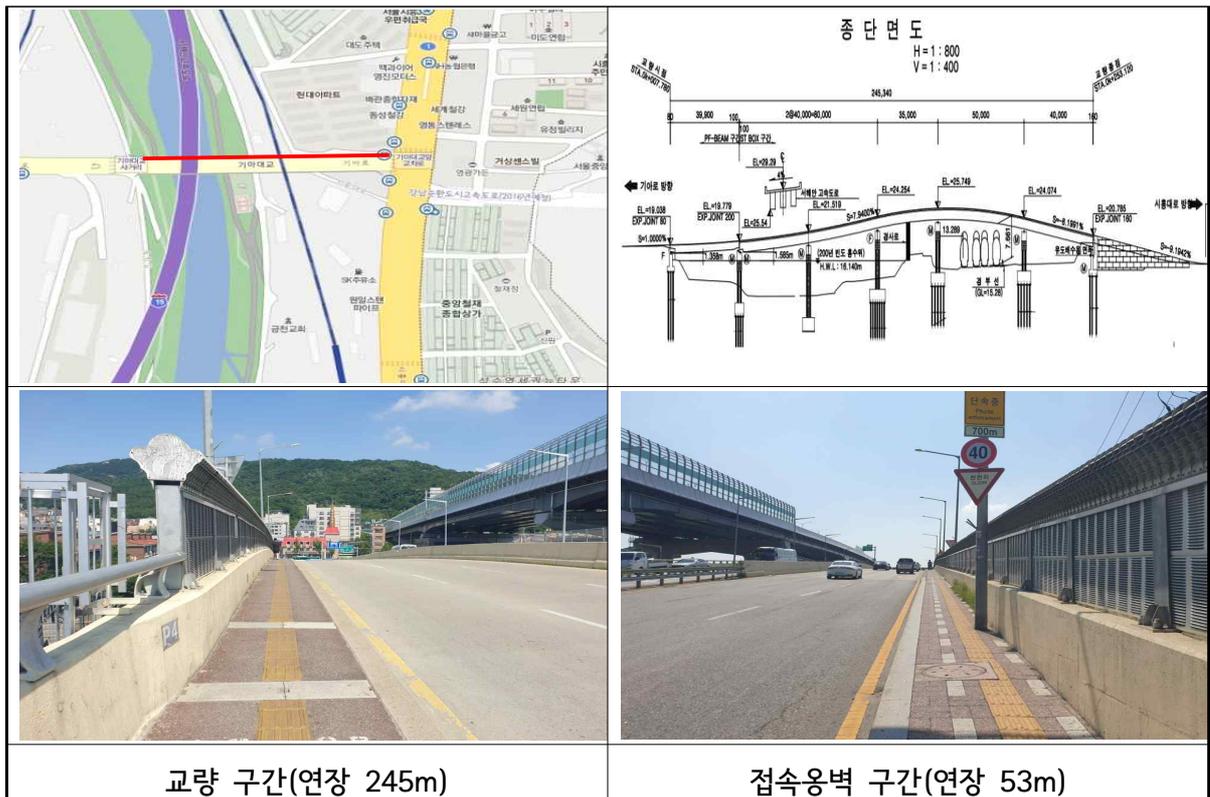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서울시 관광인프라 종합계획
▶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이동이 편리한 한강, 매력이 가득한 한강 활력이 더하는 한강 단위 사업 추진	▶ 관광객이 편안하고 머물기 좋은, 깨끗하고 걷기 좋은, 24시간 재미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단위 사업 추진

-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반복적인 이월로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낳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동 사업이 기존 경관조명에 포인트 조명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인 바, 기존의 유지관리비용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점을 감안할 때, 금회 설치계획인 경관조명이 비용 대비 효과성이 충분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임.

○ ‘기아대교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기아대교(하류교) 보도구간의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예산현액 1억 6천만원 중 90.9%인 1억 45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이는 기존 보차도 경계석을 활용하여 방호책을 설치 시 보도폭 축소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우려<sup>33)</sup>되어 보도유효폭 확보를 위한 별도의 기초연석 재설치와 이에 따른 시설물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용역이 '24년 3월 종료됨에 따른 것임.



[그림] 위치도 및 보도현황 사진

33)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보도) ③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참고로, 보도유효폭 확보 및 기초연석 재설치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가 예상되어 24년도 2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설치공사를 실시중에 있음.
- ‘**겸재교 방음판 교체공사**’는 겸재교의 화재에 취약한 소재의 방음판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예산현액 14억 47백만원 중 81.5%인 11억 81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 이는 '23년 5월 발주한 실시설계용역이 11월 30일 완료됨에 따라 12월에 공사 발주·계약되어 다음연도에 공사를 추진하기로 결정됨에 따른 것임.
  - 동 사업은 지난 2022.12.29.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구간 화재사고로 인해 인명피해(사망 5명, 부상 41명)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한 방음터널의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2024년 2월까지 화재에 취약한 아크릴(PMMA) 재질의 방음판을 준불연성 소재로 조속히 교체하도록 명령<sup>34)</sup>함에 따라,
  - 시는 서울시내 위치한 방음터널의 아크릴 방음판 교체와 방음시설 강화를 위해 2023년도 제1차 추경에서 동 사업을 비롯하여 4개의 신규사업을 편성한 바 있음.

---

34) PMMA 방음터널 교체 명령 등 방음시설 화재안전 대책 시행 통보 - 국토교통부 (2023.2.8.)

[표] 23년도 제1차 추경으로 편성된 방음판 교체 및 방재시설 강화 관련 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회계	담당부서	사업명	추경예산(안)	추진현황
1	일반회계	도로계획과	서부간선지하도로 방음터널 교체 공사	647	○ 공사완료('23.10.~12.)
2		도로계획과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	4,724	○ 공사완료('23.5.~7.)
3	도시개발 특별회계	도로시설과	방음판 교체 및 방재시설 강화	19,156	○ 방음판교체 : 3개소 공사 추진중 - '24년 9월 완료 예정 (수락고가, 금하지하차도, 상도지하차도) ○ 방재시설 강화: 4개소 완료 (수락고가, 상도지하차도, 염곡동서지하차도, 구룡지하차도) - 1개소 추진중: '24년 6월 완료 예정 (금하지하차도)
4		교량안전과	검재교 방음판 교체공사	1,447	○ 실시설계 완료(23년 11월) ○ 방음판 교체 완료(24년 5월) ○ 24년 6월 준공 예정

- 이에 서부간선지하도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염곡동서지하차도, 구룡지하차도의 방음판 교체는 완료되었고, 검재교는 '24년 6월 준공 예정이며, 수락고가, 상도지하차도, 금하지하차도 방음판 교체는 현재 추진중으로 9월 완료 예정임.
- 화재에 취약한 재질의 방음판 사용으로 인해 유사사고 발생 시 화재확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추경을 통해 신속하게 방음판을 교체하고 방재시설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한 만큼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음.

# 마 . 재 난 관 리 기 금 (재 난 계 정 )

## 기 금 운 용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수 입								지 출				
	계	전년도 이월액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기타	계	고유목적 사업비 등	예치금	기타	다음연도 이월액
2023	1,031,653	29,872	221,695	0	0	32,645	686,071	61,370	1,031,653	242,941	716,092	11	72,609
2022	1,475,780	4,718	473,024	39,000	200,000	16,832	719,036	23,170	1,475,780	759,816	686,071	20	29,872
2021	1,175,145	10,004	263,853	113,675	600,000	4,565	172,233	10,815	1,175,145	451,382	719,036	9	4,718

### ♣ 관련 용어

수입	전입금 (법정적립액)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보조금	중앙부처에서 기금으로 교부된 금액
	차입금	기금 목적사업을 위해 외부에서 차입하는 자금
	이자 수입	시금고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공공예금, 정기예금 등) 및 예탁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전년도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금을 당해연도 회계로 이전하는 금액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한 여유자금 중 상환기간이 도래하여 회수하는 금액
	기타	기타잡수입(과년도 회계 정산 반납금)
지출	고유목적사업비	기금설치조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출된 사업비
	예치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형태(1,3,6,12개월)로 금융기관(시금고)에 예치한 모든 금액
	예탁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타회계 및 타기금에 예탁하는 계정 간 이동 자금
	예수금원리금 상환	타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가져온 자금의 상환 용도 자금
	기타	위원회 운영 기본경비 등

※ 의무적립액 :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도록 된 금액

## 가) 개 요

- 재난안전관리실(재난안전정책과) 및 복지정책실(복지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sup>35)</sup>은 재난의 예방과 비상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목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해구호법」 제14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03년 설치되었으며,
- 당초 재난계정, 재해계정, 구호계정으로 분류되었으나 2005년 재난계정(재해, 재난)과 구호계정으로 개정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이 중 재난계정이 재난안전관리실 소관임.

## 나) 기금 총괄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의 당해 연도말 조성액<sup>36)</sup>은 전년도말 조성액 7,159억 43백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sup>37)</sup> 3,157억 1천만원과 사용액<sup>38)</sup> 2,429억 52백만원의 차를 합산한 7,887억 1백만원임 ([표] 참조).

[표] 재난관리기금 총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715,943	72,758	315,710	242,952	788,701

35)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재원: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6) 당해연도말 조성액 = 전년도말 조성액+(당해연도 조성액-사용액)

37) 당해연도 조성액 = 자치단체 출연금(전입금)+이자수입+기타

38) 당해연도 사용액 = 목적사업비

## 다) 기금 수입결산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수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수입 계획액은 예치금회수(3,518억 85백만원), 전입금(2,216억 95백만원)<sup>39)</sup>, 이자수입(30억원), 그외수입(1억 50백만원)을 합한 5,767억 3천만원이었으나
  -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예방·응급복구 사업을 위해 12차례<sup>40)</sup>에 걸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치금회수(증 3,640억 58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증 296억 45백만원), 그외수입(증 55억 54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수입계획액을 9,759억 87백만원으로 수정하였음([표] 참조).

[표] 수입계획액 수정내역

(단위: 백만원)

과목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당초	수정	증감	
합계	576,730	975,987	399,257	1,031,653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	32,645	29,645	32,645
그외수입	150	5,704	5,554	61,370
모집공채	0	0	0	0

39) 최저적립액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40) 주요 변경사유

- 제2차 변경 : 풍수해 대비를 위한 재난예방사업 63건
  - ▶ 재난예방 : 증 13,635,600천원 (집중호우 대비 발전차 구매 등 63건)
  - ▶ 예치금회수 : 감 13,635,600천원
- 제4차 변경 : 전년도 결산 의회 승인에 따른 수입계획 변경
  - ▶ 예치금회수 : 351,884,723천원 → 715,943,343천원 (증 364,058,620천원)
- 제8차 변경 : 여름철 한강공원 침수피해 등 응급복구 14건
  - ▶ 응급복구 : 증 316,277천원 (한강공원 하천시설물 수해 복구 등 14건)
- 제10차 변경 : 재난예방사업 집행잔액 감액,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증가분 반영
  - ▶ 재난예방 : 감 7,177,295천원 (집행잔액 반영)
  - ▶ 여유자금예치 : 증 42,375,715천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증가분)

전년도이월사업비	0	0	0	29,872
예치금회수	351,885	715,943	364,058	686,071
기타회계전입금	221,695	221,695	0	221,695

- 전년도이월액 298억 72백만원을 포함한 수정 수입계획현액은 9,759억 87백만원이었으나, 기금 2금고 변경에 따른 우리은행 의무예치금 해지액<sup>41)</sup> 459억 35백만원, '22. 5월 이후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에 따른 징수결정액 증가 등으로 1조 316억 53백만원이 수납되었음([표] 참조).

[표]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당초	수정 (가)	(나)	(다)=(가)+(나)	(라)	(마)
576,730	946,115	29,872	975,987	1,031,653	1,031,653

## 라) 기금지출 결산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지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의해 당초 지출계획액 5,767억 30백만원을 9,759억 87백만원으로 수정하였고,
- 전년도이월액 298억 72백만원을 포함한 수정 수입계획현액은

41) '22.3.17. ~ '23.3.17. 12개월물 정기예금으로 예치 중 '23.1.1.자로 서울시 2금고 변경(우리 → 신한)에 따라 2023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심의(2023.2.16.) 이후인 정기예금 만기도래시 그외수입으로 수입처리

9,759억 87백 만원이었으며, 이 중 2,429억 52백 만원을 지출하고 726억 9백 만원을 이월하였음([표]참조).

[표]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

(단위: 백만원)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당초	수정 (가)	(나)	(다)=(가)+(나)	(라)	(마)
576,730	946,115	29,872	975,987	242,952	72,609

- 세부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3년도에는 코로나19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및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119구급대 방역물품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56억 74백 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재난예방에 1,909억 35백 만원, 응급복구 242억 56백 만원, 연구용역 5억 73백 만원, 예치금 적립 7,887억 1백 만원 등을 지출하였음([표] 참조).

[표] 2023년도 지출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액	비 고
재난예방	코로나19 대응	15,674	◦ 코로나19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및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등 ◦ 소방재난본부 119 구급대 방역물품 등
	일반 재난예방	190,935	◦ 노후 방재시설 보수보강 반차주택침수방지시설, 자치도 침수방대책 제설대책 등
	소계	206,609	-
응급복구		24,256	◦ '22년 산태 한강공원 피해 복구 등
연구용역		573	◦ 도시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행정운영경비		11	◦ 기금운용심의 자료 제작 및 수당 등
차입금 원리금 상환		11,503	◦ 지방채 이자 상환
예치금		788,701	-
총 계		1,031,653	-

- 한편, '20년 4월 2일 신설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 특례<sup>42)</sup>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 '20년 당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그간 적립했던 누계법정의무예치금을 모두 소진<sup>43)</sup>하였으며 '21년부터 의무예치금을 재적립하기 시작하여 '23.12.31일 기준 법정의무예치금 잔액은 774억 64백만원인 것으로 파악됨.
- 다음으로, 금회 재난관리기금의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23년 총심의회액 3,056억 64백만원 중 23.7%인 726억 9백만원을 이월하고 있는데, 이는 재난예방·응급복구사업의 경우 수요발생의 불예측성 및 긴급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발주 및 계약이 일정치 않아 이월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 충북 오송지하차도 사고를 계기로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설치 확대, '22년 8월 기록적인 호우에 따른 반지하 침수방지시설 설치 확대 지원 등 풍수해 재난예방사업 지원 증가와 더불어
- '24년 풍수해대책기간 전 사업완료를 위하여 '23년 4분기 발주 재난예방사업의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세 이월사유는 다음 [표]와 같음.

42)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43) 의무예치금액 사용 특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의무예치금액을 전액 사용하였으며, 단지 재난관리기금의 적정 규모 유지(의무예치금 성격) 지침에 따라 2020년 최저적립액을 보유하고 있었음.

[표] 2023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다음연도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세 부 사 업 명 (재배정사업명)	부 서	심의액	이월액	이월율	사 유
45건			94,711	72,609	'23 전체심의액(305,664백만원) 대비 23.7%	
1	재난예방 (7-8. 재난안전상황실 재배치 및 기능강화)	서울시 재난상황관리과	411	195	47.4%	- 우선 사업 순차적 추진에 따른 발주 지연 - 용역 준공 기간 미도래 (2024. 2.)
2	재난예방 (7-7.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 감시시스템 확대 구축)	서울시 교량안전과	720	644	89.4%	- 용역 준공 기간 미도래 (2024. 8.) ※ '23.8. 용역 발주 후 '23.10. 용역 계약
3	재난예방 (8-2. 서소문고가차도 안전관 리 시설 설치)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200	49	24.5%	- 용역 준공 기간 미도래 (2024. 9.) - '23.9. 용역 발주 후 '23.10. 용역 계약
4	재난예방 (7-4. 노후 교량시설물(2중) 긴급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평가)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300	275	91.7%	- 용역 준공 기간 미도래 (2024. 9.) - '23.9. 용역 발주 후 '23.10. 용역 계약
5	재난예방 (7-6. 영동1교 긴급보수공사)	남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700	671	95.9%	- '23.7월 특정공법선정위 실시, '23.8월 공사 설계, '23.9월 공사계약, '23.10월 착공 - 겨울철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한 공사기간 연장
6	재난예방 (7-3. 소규모 노후·특수 교량 구조안전성 평가)	11개 차치구 도로과	2,492	2,300	92.3%	- 사업수행능력평가(PO), 가격입찰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발주, 계약 지연 - 진단용역 특성상 재하시험 및 하절기,동절기 계 측 수행 등으로 용역기간이 360일로 준공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 필요
7	재난예방 (9-28. 대림3 빗물펌프장 유 량계 설치)	서울시 치수안전과	125	52	41.6%	- 사전 행정절차(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계약 심사 등) 이행으로 '23.11월 사업이 발주되어 공사 착공 지연
8	재난예방 (10-13. (양천구) 안양천 저 수로 준설)	양천구 치수과	500	500	100%	- '23. 10.월 예산 배정 후 '23.11.3. 안양천 저수로 준설 작업지시 - '23.12월 말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가능함에 따라 준공기한 연기('24.1월)
9	재난예방 (10-15. (금천구) 안양천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	금천구 치수과	700	493	70.4%	- 사업규모 고려 시 최소 6개월의 공사기간이 필요하나, '23.10월말 예산이 재배정 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 필요
10	재난예방 (10-18. (관악구) 도림천 준설)	관악구 치수과	500	218	43.6%	- '23.10. 예산배정 후 '23.11. 착공 - 적정 공사 시행에 6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사고 이월
11	재난예방 (10-20. (서초구) 사당천 외 3 개 하천 퇴적토 긴급준설)	서초구 물관리과	1,440	1,190	82.6%	- '23.10. 예산배정 후 '23.11. 착공 - 적정 공사 시행에 6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사고 이월

연번	세 부 사업 명 (재배정사업명)	부 서	심의액	이월액	이월율	사 유
12	재난예방 (10-21. (서초구) 사당C 저류조 저류용량 확대 정비)	서초구 물관리과	2,100	1,489	70.9%	- '23.10. 예산배정 후 '23.11. 착공 - 적정 공사 시행에 6개월이 소요되며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시 품질확보가 어려워 사고 이월
13	재난예방 (10-22. (강남구) 탄천 준설)	강남구 치수과	400	400	100%	- '23.10. 예산배정 후 '23.12. 착공 - 적정 공사 시행에 3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사고 이월 ('24.2. 준공 예정)
14	재난예방 (10-24. (강남구) 양재천 하천시설물 정비)	강남구 치수과	300	50	16.7%	- '23.10. 예산배정 후 '23.12. 착공 - 적정 공사 시행에 3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사고 이월 ('24.2. 준공 예정)
15	재난예방 (3-49. 상내천 고지배수로 및 침사지 준설)	송파구 치수과	1,400	57	4.1%	- 공사 시행 중 변동적인 기상상황(기습 호우)으로 인해 빈번히 공사가 중지되어 절대공기가 부족
16	재난예방 (10-31. (강서구) 공항빗물펌프장 제진기 교체)	강서구 물관리과	1,400	1,202	85.9%	- '23.10. 예산배정 후 '23.11. 착공 - 로터리식 제진기 제작기간 절대 부족 (제작기간 5~6개월)
17	재난예방 (10-32. 흑석 빗물펌프장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	서울시 치수안전과	150	133	88.7%	- '23.10. 예산배정 후 용역 추진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 (용역기간 : 6개월)
18	재난예방 (3-4. 강남역 알대 외 3개소 내수 재해위험지구 하수관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7,000	5,214	74.5%	- 대심도 빗물배수터널과 연계하여 하수관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023. 9월 착수하여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19	재난예방 (3-16. 동일로 564 ~ 동일로 657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	중랑구 치수과	1,000	526	52.6%	- '23. 7월 공사 착공 후 적정한 공사 시행에 9개월이 소요되어 사고이월, '24년 우기 전 준공
20	재난예방 (10-34. 경인로77길 알대 하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영등포구 치수과	360	358	99.4%	- '23.10. 예산배정 후 '23.11. 용역 착수 - 용역 추진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용역기간 : 6개월)
21	재난 예방 (3-12. 사암당로 39 ~ 서초대로50 길 41 사각형거 보수)	서초구 물관리과	1,500	1,121	74.7%	- 사전행정절차 이행으로 '23.11월 공사 발주 - 준공기간이 미도래하여 사고이월 (계약기간 '23.10. ~ '24. 4.)
22	재난예방 (3-56. 2023년 창계천 차집관로(우안 단면보수)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3,000	1,698	56.6%	-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23.5월 공사착공 후 수방기간 공사 중지(5.15~10.15)로 절대공기 부족 - 준공기한('24.6.30) 미도래로 사고이월
23	재난예방 (5-16. 중랑물재생센터 제1,2영류동 연조펌프 교체)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8,000	7,248	90.6%	- '23. 6월 발주 - 디젤엔진 제작에 12개월이 소요되어 사고이월 (제작, 설치기간 1년)
24	재난예방 (10-25. 상내천 고지배수로 및 침사 지 준설)	송파구 치수과	3,000	2,950	98.3%	- 공사 시행 중 변동적인 기상상황(기습 호우)으로 인해 빈번히 공사가 중지되어 절대공기가 부족 ※ 여름철 호우로 인해 고지배수로 내 준설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예산으로 전구간 준설 시행

연번	세 부 사 업 명 (재배정사업명)	부 서	심의액	이월액	이월율	사 유
25	재난예방 (9-37. 지하공동구 위험구역 안전관리 감시시스템 구축)	중량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550	550	100%	- '23. 8월 예산배정 후 '23. 11월 조달 발주 -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24. 3월 준공)
26	재난예방 (10-37. 중량물재생센터 수변전실 고압 배전반 교체)	중량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970	871	89.8%	- '23.10. 예산배정 후 '23.11. 착공 -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 이월 ('24.6. 준공)
27	재난예방 (8-22. 유압펌프장 유입수문관양기 및 방류펌프장 수문관양기 계량)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1,300	652	50.2%	- '23. 8월 예산배정 후 '23.11월 착공 -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 이월 ('24. 4. 준공)
28	재난예방 (8-23. 방류펌프장 엔진펌프 2호기 교체)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2,000	1,610	80.5%	- '23. 8월 예산배정 후 '23.11월 착공 - 엔진펌프 제작에 13개월 소요되어 사고이월 ( '24. 12. 준공)
29	재난예방 (9-39. 방류펌프장 엔진펌프 2호기 펌프 부분교체)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300	300	100%	- '23. 8월 예산배정 후 '23.11월 착공 - 제작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사고이월 ( '24. 6. 우기전 준공)
30	재난예방 (9-38. 지하공동구 위험구역 안전 관리 감시시스템 구축)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550	449	81.6%	- '23. 8월 예산배정 후 '23. 11월 조달 발주 -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24. 3월 준공)
31	재난예방 (8-24. 소화조 2,3계열 가스교반기실 내부배관 교체)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과과	500	375	75.0%	- '23. 8월 예산배정 후 '23. 11월 조달 발주 -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24. 3월 준공)
32	재난예방 (3-57. 난지계(한강) 차집판커 보수)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3,000	2,745	91.5%	- '23. 8월 계약 체결 후 준공기한 미도래 (준공일 24.06.28) ※ 수방기간(5.15~10.15) 공사중지
33	재난예방 (5-3.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사설 등 설치)	2개 자치구 건축과	710	675	95.1%	-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사설 사업으로 소유자 동의를 징구에 상당 기간이 소요 - 준공기한을 연기한 후 '24년 우기 전 준공
34	재난예방 (10-3. 빗길 미끄럼·도로결빙 교통사고 예방)	서초구 도로과	2,500	2,471	98.8%	- '23.10. 예산배정 후 '23.12월. 착공 - 5°C 이하일 경우 포장공사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어 동절기 공사가 어려움으로 사고이월
35	재난예방 (9-11. 시민안전을 위한 맨홀관리 강화)	6개 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7,336	6,385	87.0%	- '23.10. 예산배정 후 '23.11월. 공사 발주 -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 이월 ('24. 5. 준공)
36	재난예방 (산체적 제설제 확보 및 보도 이면 도로 제설 강화)	8개 자치구 도로과	1,910	1,145	59.9%	- '23/'24년도 제설대책 추진에 따른 사고이월 (2023.11.15.~2024.3.15.)

연번	세 부 사 업 명 (재배정사업명)	부 서	심의액	이월액	이월율	사 유
37	재난예방 (3-3. 상습결빙구간 안전시설 확충)	2개 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4,790	2,168	45.3%	- 사전행정절차(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등으로 착공 지연('23.11.) - 준공기한('24.2.) 미도래로 사고이월
38	재난예방 (8-3. 겨울철 제설대비 도로열선 설치)	2개 자치구 도로과 (용산구, 서대문구)	1,590	748	47.0%	- 사전행정절차(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등으로 발주 지연('23.9.) - 준공기한('24.2.) 미도래로 사고이월
39	재난예방 (9-12. 겨울철 제설대책 대비 대응 추진)	19개 자치구 도로과	8,650	7,006	81.0%	- '23/'24년도 제설대책 추진에 따른 사고이월 (2023.11.15.~2024.3.15.)
40	재난예방 (10-5. 겨울철 대설 폭설 대비 제설대책)	7개 자치구 2개 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9,355	8,174	87.4%	- '23/'24년도 제설대책 추진에 따른 사고이월 (2023.11.15.~2024.3.15.)
41	재난예방 (9-10. 상습장제사고위험 도로 긴급개선 추진)	서울시 도로계획과	500	500	100%	- '23.8. 예산배정 후 사전절차 이행('23.9.~11.) - '23.12. 용역 착수,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 '24. 11월 준공)
42	재난예방 (9-14. 자하차도 풍수해 재난대응 강화)	3개 자치구 3개 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7,357	4,104	55.8%	- 충북오송지하차도 사고를 계기로 다수 기관의 진입차단설비 관급자재 구매가 집중되면서 납품 지연으로 사고이월 ('24.5월 준공예정)
43	재난예방 (9-15. 재난통합본부를 위한 기반시설 개선)	성동도로사업소 기전과	1,312	1,293	98.6%	- '23.8. 예산배정 후 사전절차 이행('23.9.~11.) - '23.12. 착공 후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 '24. 3월 준공 예정)
44	재난예방 (5-17. 소규모(3중 비법정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4개 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서부, 북부, 남부, 강서)	1,528	1,125	73.6%	- 정밀안전진단용역 특성상 재하시험 및 하절기, 동절기 계획 수행 등으로 용역기간이 360일로 준공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 필요
45	재난예방 (8-4. 노후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3개 자치구 도로과 (용산, 관악, 서초)	305	230	75.4%	- '23.8. 예산배정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O), 가격 입찰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발주 지연 - 진단용역 특성상 재하시험 및 하절기, 동절기 계 측 수행 등으로 용역기간이 360일로 준공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 필요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비상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기금의 집행 시기를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기금 역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급적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고 차년도 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 바 . 도로굴착복구기금

### 기금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수 입							지 출				
	계	전년도 이월금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상환금	기타	계	비용자성 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다음연도 이월액
2023	73,023	1,382	-	1,049	26,212	-	44,380	73,023	40,269	31,727	-	1,027
2022	59,703	1,081	-	620	16,893	-	41,109	59,703	32,110	26,211	-	1,382
2021	53,193	-	-	423	19,738	-	33,032	53,193	35,219	16,893	-	1,081

#### 가) 개 요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차량통행 및 시민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공사의 수준향상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989년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 「도로법」 제91조에 의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과 그 이자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하여 도로굴착복구 및 복구된 도로의 정비사업, 기타 부대경비 등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음.
  - 수입은 이자수입 10억 49백만원, 예치금회수 262억 12백만원, 기타(원인자부담금) 443억 8천만원, 전년도 이월금 13억 82백만원을 합한 730억 23백만원이며, 이 중 도로굴착복구공사와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비, 기금관리비로 기금총액의 55.1%인 402억 69백만원을 지출하고, 10억 27백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17억 27백만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 나) 기금 총괄

- 도로굴착복구기금의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275억 94백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454억 29백만원과 사용액 402억 69백만원의 차(51억 60백만원)를 합한 327억 54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기준 51억 60백만원을 흑자운영 한 것으로 나타남([표] 참조)

[표] 도로굴착복구기금 총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E=A+B)
	(A)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도로굴착복구기금	27,594	5,160	45,429	40,269	32,754 (사고이월 1,027 포함)

- 연도별 도로굴착복구기금 누계액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누계액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의 징수 현실화로 인해 수입액이 증가한 반면, 굴착복구공사 중 사후정비비 및 전산개발비 등 지출이 감소함에 따른 것임.

[표] 기금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도 (결산)	2018년도 (결산)	2019년도 (결산)	2020년도 (결산)	2021년도 (결산)	2022년도 (결산)	2023년도 (결산)	
수입액	22,143	32,058	40,486	33,119	33,455	41,729	45,429	
원인자부담금	21,696	31,672	39,945	32,780	33,032	41,109	44,380	
이자수입 등	447	386	541	339	423	620	1,049	
지출액	25,164	31,018	36,905	31,453	35,219	32,110	40,269	
도로굴착복구공사	소계	24,962	30,873	36,673	30,580	33,396	31,195	39,512
	직접복구비	18,260	25,130	32,333	27,332	29,197	26,204	35,324
	사후정비비	5,218	4,382	2,834	1,731	2,761	3,500	2,755
	감리비및부대비	1,484	1,357	1,506	1,517	1,438	1,491	1,433
	기타(잔산운용 등)	202	145	232	873	1,823	915	757
사고이월	-	-	-	598	1,080	1,382	1,027	
증감	감 3,021	증 1,040	증 3,581	증 1,068	감 2,844	증 9,619	증 5,160	
연도말 잔액(예치금)	13,451	14,491	18,072	19,140	16,893	26,211	31,727	

다) 기금지출 결산

-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지출계획이 369억 51백만원이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의해 66억 50백만원이 증가한 436억 1백만원으로 수정되었고, 동 지출계획액 대비 89.7%에 해당하는 402억 69백만원을 지출하고 10억 27백만원을 이월시킴([표] 참조).

[표]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결산

(단위: 백만원)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당초	수정 (가)	(나)	(다)=(가)+(나)	(라)	(마)
36,951	43,601	1,382	44,893	40,269	1,027

- 세부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고유목적사업인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위한 지출 399억 20백만원이 발생했으며, 도로굴착 복구시스템 시스템개발 및 유지운영에 3억 44백만원, 기본경비 5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표] 참조),

[표] 도로굴착복구기금 고유목적사업비 운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지출액
비용자성 사업비 (도로굴착 복구기금)	계		40,269
	도로굴착복구공사	도로굴착복구 및 굴착으로 인한 노후도로정비 관련 공사비, 감리비, 연구용역비	39,920
	도로굴착 복구시스템 시스템개발 및 유지운영	굴착복구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시스템 기능개선	344
	기본경비	굴착복구 심의회 참석수당	5

- 금회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이월은 3건 10억 27백만원으로 용역의 준공기한이 미도래함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는데, 도로굴착 복구가 수시로 발생하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기금 역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급적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고 차년도 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표] 참조).

[표]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다음연도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세 부 사 업	부 서	심의금액	이월액 (이월율)	사 유
3건			1,027	1,027 (100%)	
1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포장 도로 정비공사 등 건설 사업관리용역(1권역)	도로관리과	279	279 (100%)	◦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3.5.17. 계약 체결 및 진행 중으로 준공기한 미도래('24.5.)로 사고이월
2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포장 도로 정비공사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2권역)	도로관리과	565	565 (100%)	◦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3.6.16. 계약체결 및 진행 중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 '24.6.)로 사고이월
3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포장 도로 정비공사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3권역)	도로관리과	183	183 (100%)	◦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3.7.19. 계약 체결 및 진행 중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 '24.5.)로 사고이월

[붙 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붙임]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연번	시정권고사항	소관실국
40	세입 편성 추계 방식 검토와 세입목 착오, 징수결정액 산정 오류	재난안전관리실
51	성과보고서상 목표치 수정과 예산성과지표와 BSC성과 평가 지표간의 일관성 부족	도시기반시설본부 재난안전관리실 도시교통실

## 40. 세입 편성 추계 방식 검토와 세입목 착오, 징수결정액 산정 오류

[ 세입 예산 추계 방식 검토 등 / 재난안전관리실 ]

### 가. 현황 및 문제점

재난안전관리실 도로시설과의 일부 세입목에 대한 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정리보류액
225-01 지난년도수입	3,727,895,000	3,272,170,644	2,727,540,344	344,366,900
233-01 변상금	15,539,000	216,529,300	186,511,800	0
511-03 기금	0	325,000,000	0	0

#### □ 예산 편성과 징수결정액 산정

- (지난년도수입) 소관부서에 의하면 예산현액 지하도상가 임대료 (약 37억) 및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2,700만원)은 부과액 및 수납액의 변동이 크고 일정치 않아 최근 5년간('17~'21) 평균 징수액으로 전망하여 37억 2,800만원 예산편성하였고, 징수결정액은 전체 체납금액에 대해 징수결정하였고, 수납액은 2억원이고, 예산편성액과 수납액 차이가 35억 2,800만원 차이 발생함. 지하도상가 임대료 등과 관련, 그간 장기 체납문제 해소를 위해 시효완성 체납건에 대해 3억 2,500만원 결손처분 조치함.
- (문제점) 지난년도수입은 과거 연도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한 수입으로, 과거 연도 수입을 분석할 경우 일정 정도 예측이 가능한 세입으로, 예산은 실제수납 가능액을 추계하여 편성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통 수행하고 있음.

예산현액(전년도이월액 없는 경우) 편성기준은 소관부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근 3개년 또는 5개년 (예상) 평균 부과액 + 최근 3개년 또는 5개년 (예상) 평균 부과액\* 최근 3개년 또는 5개년 부과액 증가율] × 최근 3개년 또는 5개년 평균 징수율 형태의 산식임.

그런데, 최근 상황변화에 따른 수납액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일정 산식에 의한 예산편성을 할 경우 실제 수납액이 편성액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지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

- (변상금) 예산편성 시 최근 3년('19~'21) 징수액 평균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서울시설공단에서 '23년 3월 착오 고지한 1억 7,800만원('24년 1월 징수취소 처리 완료)이 징수결정액에 포함되어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에 차이 발생
- (문제점) 서울시설공단(위탁대행기관)에서 변상금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등 변동 내역을 매월 보고했으나, 상기 착오 고지하여 취소한 건을 시설공단에서 '23년도 매월 보고 내역서에 누락한 것이 '23년도 서울시 결산 과정에서 발견되어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이를 '24년 1월 징수취소 처리한 사실이 존재함. 시설공단 매월 보고 금액을 도로시설과에서 확인 체크하는 과정이 상당기간 지연되어 '23년도 세입결산이 정확하게 되지 못하게 되었음
- (기금) 예산 편성 시 511-03 기금으로 편성해야하나, 세입 예산과목 착오로 511-01 국고보조금으로 3억 2,500만원 세입편성하여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 발생(국고보고금이 예산현액 3억 2,500만원, 수납 0원으로 기금과 국고보조금 고려 시 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모두 3억 2,500만원으로 일치함).

- (문제점) 세입목 편성에 착오가 소관부서와 2차 검토 부서인 예산과에서 자체 발견 수정되지 못한 점.

부정확한 세입추계는 적절한 세출예산 편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방해하는 요인과 균형재정 실현에 반하는 것임.

평균 징수율의 반대 의미는 평균 체납률을 의미함으로, 세입예산 편성기준을 통한 세입추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체납률 또는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최소화하도록 해야 함.

## 나. 시정권고

예산 편성기준은 보통 [최근 3개년 또는 5개년 (예상) 평균 부과액+ 최근 3개년 또는 5개년 (예상) 평균 부과액\* 최근 3개년 또는 5개년 부과액 증가율] × 최근 3개년 또는 5개년 평균 징수율 형태의 산식이지만, 최근 상황변화에 따른 수납액 상황을 고려하여 세입 추계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일정 산식에 의한 기계적 추계 방식에만 의존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임.

그리고 위탁대행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의 매월 변상금 변동내역 보고를 도로시설과에서 자체 점검 주기를 세워 당해 연도에 착오 고지 내역을 적절한 시기에 발견하여 수정하여야 할 것임

예산편성 시 일차적으로 주관부서(해당 실 또는 국)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세입목 구분에 착오 입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착오 입력된 오류는 검토 부서인 예산부서에서 실질적 검토를 하여 예산편성 오류를 자체 발견 수정되도록 하는 노력과 교육을 기울일 것을 권고함. 그것이 향후 세입결산을 올바르게 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51. 성과보고서상 목표치 수정과 예산성과지표와 BSC성과평가 지표간의 일관성 부족

[ 도시철도망 적기 구축 등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교통실, 재난안전관리실 ]

## 가. 현황 및 문제점

### 1) 공사의 목표 공정률

도시철도망 적기 구축 정책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 기지 건설과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로 2개 지표임. 이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은 공정률 지표로서 성과보고서 제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도시철도망 적기 구축 정책사업목표 관련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2년 달성성과	'23년 달성성과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 기지 건설	공정률	목표	38.2	82.0
		실적	38.2	62.0
		달성률	100.0	75.6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공정률	목표	5.6	19.2
		실적	5.6	11.0
		달성률	100.0	57.3

상기 지표는 '22년도 10월경 차년도 '23년도 예산 자료 제출시 '23년도 성과계획서(목표 공정률 표기 포함)도 함께 제출되어 서울시 의회에서 승인받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 경우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는 연도별 계획 공정률에 의함. 그런데 '23년도 중에 공기 연장

(진접선) 또는 공사 추진 순연 및 감추경(9호선)으로 연도별 계획 공정률 변경되었음.

연도별 변경된 계획 공정률에 의한 수정 계획 공정률에 의한 경우 '23년도 달성률은 다음과 같이 변경됨.

□ 수정 계획 공정률에 의한 달성률 산정

-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1공구(인입선) 및 2공구(차량기지) 건설공사의 작업일보 공정률에 의한

(2023. 12. 31. 공정률 기준)

구 분	수정 계획	실 적	달성률
1공구	68.3%	68.3%	100.0%
2공구	56.3%	55.5%	98.5%
공정률 평균	62.3%	61.9%	99.2%

수정 계획 공정률(수정 목표치)에 의한 경우 달성률은 당초 75.6%에서 99.2%로 상향됨

-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1공구, 2공구 및 3공구 건설공사의 작업일보 공정률에 의한

(2023. 12. 31. 공정률 기준)

구 분	수정 계획	실 적	달성률
1공구	10.9%	11.4%	104.6%
2공구	9.8%	9.8%	100.0%
3공구	11.3%	11.3%	100.0%
공정률 평균	10.6%	10.8%	101.9%

수정 계획 공정률(수정 목표치)에 의할 경우 달성률은 당초 57.3%에서 101.9%로 상향됨

교통취약지역 도시철도망 적기 구축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인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수도권 도시철도망 구축(교통사업특별회계)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인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및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지표에 있어서도 상기와 동일하게 상황변화에 따른 수정 목표 공정률이 아닌 당초 목표 공정률을 사용하여 성과 측정하고 있음.

소관 부서 담당자에 의하면, 성과 보고서를 시스템에 입력 기술하는 경우, 당해 연도 목표치를 성과계획서 목표치 대로 고정시키고, 달성률 기술시 미달 달성률에 대한 원인을 기술하는 형태 또는 상황변화에 따른 목표치를 수정 기입하고 수정한 이유에 대해 기술하고 달성률을 산정하는 형태가 존재한다고 함.

당해 연도에 불가피한 연도별 계획 공정률 변경의 경우 성과 보고서 작성시 당초 목표 공정률을 변경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할 수 있음.

- 1) '23년도 성과계획서와 '23년도 성과 보고서상 목표 공정률을 동일하게 고정시키는 방안(소관 부서 담당자에 의하면 성과 평가의 일관성을 위해 동일하게 고정한다고 언급함)
- 2) '23년도 성과 보고서 작성 시(당해년도 2월과 3월경) 상황 변화에 따른 연도별 변경 계획 공정률에 의한 수정 목표 공정률 기준으로 목표대 실적을 평가하는 방안

전해1)의 경우 성과 평가의 목표치 동일 유지라는 명분하에 성과보고서가 작성되는 것으로, 피평가자의 성과 평가가 상황변화를 고려하지 않아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함. 그리고 상기 지표는 과장 및 국장 등의 간부 BSC성과지표와는 연결되지 않는 경우, 소관부서 실무자는 목표 공정률 수정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임. 한편, 간부 BSC성과지표의 경우 상황 변화에 따른 목표치 수정을 하여 평가의 수용성을 높인다고 함.

## 2) 기타 목표치

버스 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를 통한 버스 서비스 제고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 성과지표는 버스 이용시민 만족도이며, 목표치 설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 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

보통 목표치는 지난 3년 목표치의 평균 혹은 전년도 목표치의 일정 수치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버스 이용 시민 만족도의 경우에는 특별히 전년도에 실제로 달성한 실적치를 기본으로 하여, 일정 수치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설정하였음.

또한 '20년과 '21년의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치에 0.02를 가산하는 소극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였다면, '22년과 '23년에는 그 10배 수치인 0.2를 가산하는 등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최근 5년간 버스이용시민 만족도 목표 및 실적  
성과관리시스템 기준(BSC성과평가)**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점)	81.26	81.86(+ 0.02)	82.04(+ 0.02)	83.64(+ 0.2)	83.88(+ 0.2)
실적(점)	81.84	82.02	83.44	83.68	83.93

다만, 예산성과지표상 목표치는 BSC 성과관리시스템의 실제 목표치를 고려치 아니하고 이전 연도의 자료를 불러와서 단순히 0.1를 가산함으로써 목표를 설정했던바, 향후에는 보다 면밀히 수치를 입력하여 성과관리시스템과 예산성과보고서상 수치를 일치시키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예산성과지표(사업설명서) 버스이용시민 만족도 목표치**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목표(점)	81.30	81.40	81.50	81.60	81.70

**3) 성과보고서상 상황변화에 따른 목표치 변경노력 미흡**

성과지표 하도급 실태점검 개소 수(건)의 성과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1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하도급 실태점검 개소 수(건)	하도급 실태점검 결과	목표	605	605
		실적	605	2,580
		달성률(%)	100	426

'23년 성과지표 확정 시기('22년 11월)에는 실태점검 개소 수는 목표치는 605건이었으나, '23년 공정하도급 추진계획 수립 시기('23.2.)에

점검대상 확대에 따라 도금액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1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점검대상이 확대되었음. 성과 보고서상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실태점검 대상 개소 수 목표치가 변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치에 기준으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함. 이 지표는 BSC성과 지표에 연계되지 않음.

## **나. 시정권고**

성과계획서상 목표치와 성과보고서상 목표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계되어 동일한 숫자로 표기되어야 하고, 차년도 성과계획서상 과거년도 목표치와 실적치는 상황변화에 따른 공정률 보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성과보고서상 목표치와 실적치 숫자와 연계되어 표시되어 일관성을 가져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성과지표 숫자 입력과 차상급자에 의한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임.

성과지표 평가자 입장에서 연차별 성과계획서상 목표 공정률이 상황변화에 따라 수정(rolling)되고 있는 경우, 성과평가 시 수정된 목표 공정률을 이용하여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또한, 성과보고서상 성과지표(예산성과관리 지표)가 소관부서 간부의 BSC성과지표와 연계되어 동일할 경우, 당해 연도 상황변화의 경우 성과보고서 상 (수정)목표치가 BSC성과지표상 목표치와 동일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